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63-01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

일시 | 2012. 3. 15 (목) 14: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홍일표 의원님, 박경서 전 인권대사님 그리고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발제를 맡아주신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님과 김규현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재원 변호사님,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선생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해 말 북한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통제사회에서 김일성에 이어 20여년간 북한을 통치하던 김정일의 급작스런 죽음과 그의 3남 김정은의 권력 상속으로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시점에서 불거진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관련국들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2008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탈북주민의 강제북송 중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한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우리정부와 북한정권 그리고 중국정부에까지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위원장은 반기문 UN사무총장, 필레이 UN 고등판무관과 안토니오 UNHCR 고등판무관에게 서신을 보내 이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UN 인권이사회에 실무자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정권은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게 정치적 박해는 물론 고문, 강제낙태, 공개처형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북한주민이 받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 외부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권위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문을 열 때 국가기관으로서의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주위에서 보내 준 기대만큼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지, 관련부처와의 협조는 잘 될 수 있을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개소 초기에는 신고센터 운영에 적지 않는

애로가 있었습시다만 지금은 관련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고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한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보고회에 지금까지 접수된 834사례 중 몇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겠지만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북한내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 받은 인권침해 사례가 대표적이며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들의 인권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인권현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탈북과 강제북송을 반복하다 어렵게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혹시라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해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조차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차 모르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본인들의 인간성도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정권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는 것을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인권 문제에 눈 감고 있는 무감각한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나 자신들의 반대세력에 대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보편적인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여 이를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릴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우리 후세에게 오늘의 아픈 현실을 전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보고회는 인터넷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열망과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합쳐진다면 북한인권이 개선될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모쪼록 이번 보고회가 중국 등 해외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탈북주민들과 외부세계와 철저히 통제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이번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2. 3.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프로그램 ■■■

- ❖ 일시 : 2012년 3월 15일(목) 14:00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 사회 : 안석모(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14:00~14:05 (5분)	사 회	• 안석모 정책교육국장 (국가인권위원회)
14:05~14:10 (5분)	개회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4:10~14:30 (20분)	축 사	•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14:30~14:50 (20분)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14:50~15:00 (10분)		박경서 전 인권대사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14:10~14:30 (20분)	세션 1	사회 : 양현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14:30~14:50 (20분)		• 기조발제 :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시사점 발제 :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14:50~15:00 (10분)		• 발제1 : 독일 중앙기록보존소의 교훈과 시사 발제 : 김규현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4:50~15:00 (10분)		• 플로어 질의 및 응답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15:00~15:10	휴 식	
15:10~15:30 (20분)	세션 2	<p>사회 : 윤남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2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경과 및 신고사례 보고, 발전방안 <p>발제 :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증언 : 북한이탈주민 3명〉</p>
15:30~16:30 (60분)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원 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플로어 질의 및 응답
	폐 회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목 차 ■■■

■ 기초발제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시사점	3
발제 : 엄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 주제발표 1	25
독일 「중앙기록보존소」의 교훈과 시사	27
발표 : 김규현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질의 및 응답	41
플로어 참석 자유질의 및 응답	
■ 주제발표 2	43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경과 및 신고사례 보고, 발전방안	45
발표 :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나아갈 길	51
토론 : 이재원 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발전방안	55
토론 :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동포의 인권개선에 바치는 큰 선물	59
토론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질의 및 응답	61
플로어 참석 자유질의 및 응답	
■ 부 록 (북한인권침해신고 주요 사례)	63
정치범 수용소	65
교화소	80
조사과정에서의 고문피해	97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114

기조발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시사점

염 돈 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시사점

염 돈 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1. 머리말

지난 몇 해 동안 국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구출운동과 중국의 탈북자 북한송환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적극화되고 있다. 2003년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이후 2004년 10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고 2006년 6월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번 불참하고 세 번 기권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2006년 이후 적극적 찬성 태도로 돌아섰다. 작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설하여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장기적인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동포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우리가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적극화할 경우 북한정권이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갈등을 유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간적 권리’(human right)보다는 ‘인간적 필요’(human needs)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차 때문에 2005년 8월 이후 세 번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거 동독의 인권상황과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의 대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동독의 인권상황²⁾

동독의 인권상황은 냉전 당시 다른 공산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나은 편이었으며, 특히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러나 동독에서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가 대폭 제한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재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 2011, pp.26-29.

2) 독일의 분단 상황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차이점이 많다. 따라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독의 인권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동독에서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용 등 북한에서와 같은 반인륜적 인권침해 사례는 적었다.

가. 자유왕래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국제인권협약 제12조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국민건강, 공중도덕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토록 되어 있으나 동독정부는 주민들의 외국 이주와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동독정부는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는 한편, 국경지역에 지뢰지대 및 자동발사 장치를 설치하고 국경탈출자 시도자에 대해서는 총격명령을 내려 베를린 장벽 설치 후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람이 197명에 달했다. 또 국경탈출 시도자나 방조자에 대해서는 공화국도주(징역 8년), 불법적 외부인사 접촉죄, 반국가적 정보자료 유출 및 선동죄, 간첩죄, 반국가적 인신매매죄 등으로 처벌했고 가족들에게도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⁴⁾

또 해외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위협, 해고, 특정지역 체류 금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거부 등 불이익을 주었고, 서독방문 희망자에 대해서는 여행포기를 회유했으며 반체제 인사에게는 서독이주를 강요하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많았다.

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인권협약 제19조 2항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과 전파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독정부는 동독정부나 소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공기관 비방중상죄, 반국가적 선동죄, 반국가적 정보·자료 유출죄, 불법적 외부인사 접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했으며, 반체제 작가들의 작품은 출판을 금지시켰다.⁵⁾

4) Amnesty International 발표에 의하면 1981년 한 해 동안 160명이 탈출 및 이주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주독 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10, p. 169.

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

독일의 경우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동독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활동을 허용했으나 국제인권협약 제18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는 않았다.

동독정부는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반면, 신교의 보호아래 활동했던 평화운동 및 환경보호 운동 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교사임용 제한, 자녀 진학 시 차별, 군복무 거부자의 형사처벌 등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국제인권협약 제14조는 재판의 공개, 변호인 선임 및 변호업무에 대해 피고인인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동독에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 제한, 조서의 강제서명, 기소문의 구두전달, 비공개 재판 등 인권침해가 빈번했다.

마.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와 고문

동독에서는 국제인권협약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문, 비인간적 가혹행위나 처벌 등의 위반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간수들의 폭력, 가족·친지에 대한 위협 등이 간혹 있었고 행형시설이 열악하여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5) Amnesty International 발표에 의하면 매년 100여명이 동독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다가 처벌을 받았다.

3. 서독의 대동독 인권개선 노력과 동독의 반응

가. 개 요

인권보장은 서독 기본법의 3대 명제의 하나였기 때문에 동독주민의 인권보호는 서독의 독일(통일)정책에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은 동·서독 관계와 역대 정부의 내독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즉,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전에는 동독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촉구,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 동독과의 비밀교섭을 통한 특정문제의 해결⁶⁾ 등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로 상호관계가 긴밀해 진 후에는 일층 다양한 방법으로 동독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항상 약간의 논란과 혼선은 있었다.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평화, 자유(인권), 통일 등 3가지 명제 중 자유가 통일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평화와 자유, 평화와 통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화해를 통해 독일과 유럽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가 인권이나 통일 문제 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는 역대 정권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조금씩 달라져 왔다. 특히 1969년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의 「신동방정책」⁷⁾ 추진 이후부터는 점차 ‘평화’ 명제가 더욱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평화정책을 이유로 인권보장 문제가 중요성을 잃은 적은 없었다.

6) 동독 정치범 석방교섭이 이에 해당한다.

7) 서독에서 「동방정책」은 1949년 건국 이후부터 추진해 온 소련 및 동유럽에 대한 정책을 말하며, 「신동방정책」은 1969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 취임 이후 추진된 사민당 정부의 소련, 동유럽 및 동독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말한다.

나.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전의 정책

서독정부는 1949년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부터 동독의 인권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으나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2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전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연설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징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한편, 동독과의 비밀교섭을 통해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쳤다. 1961년 11월 각 주정부들이 출연하여 동독과의 국경지역인 니더작센주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일명, 정치적 폭행사태 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도 그 해 8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데 따른 상징적, 경고적 조치의 하나였다.⁸⁾ 한편, 서독정부가 1962년부터 서독 개신교 단체를 앞세워 동독과의 비밀협상을 통한 동독 정치범 석방노력을 추진하여 정치범 33,755명과 그 가족 25여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은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기록된다.⁹⁾

또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9년 개최된 1·2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국제적 일반원칙을 들어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에 인권조항을 삽입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¹⁰⁾

8) 중앙기록보존소에는 검사 2명, 행정요원 등 총 7명의 직원이 동독의 공개자료, 재판문서, 동독으로부터의 이주·탈주자 등을 통해 동독주민의 인권탄압에 간여한 동독 경찰, 판·검사, 비밀경찰(Stasi) 요원 및 협조자 등 총 8만 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관리 했으며, 이 자료는 통일 후 동독 공직자 재임용 심사와 과거청산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염돈재, 위의 책, pp.81-84.

9) 서독 정부는 1962-1988년 간 총 34억 6,400억 마르크(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 33,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 왔다. 이 사업(Freikauf)은 동독 치하에서 고통 받는 동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해야 한다는 순수한 인도적 목적에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상세사항은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85-91 참조.

10)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에는 “양측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諸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 자주성 및 영토보존의 존중, 자결권, 인권 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諸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명간 (분단)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전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인권신장을 이룩하는 관계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며 의미라는 것은 확실하며, 어떤 경우든 이러한 견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¹¹⁾

『양측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인권, 동등권, 평화적 공동번영 및 차별 금지의 기반 위에서 (상호)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공포해야 한다.』¹²⁾

브란트 총리가 이렇게 동독과의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동독 측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증진,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동·서독관계 정상화 이후의 정책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로 상호관계가 정상화되고 1975년 8월 헬싱키최종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서독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독인권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이 다른 공산국가들에 비해 불법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 극렬한 인권탄압이 적은 편이고 동독의 근본적 체제변화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 보다는 양자 간의 교섭을 통해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 완화’에 주력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교섭을 통해 ①동·서독 간의 왕래와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확대, ②국경 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 중지, 국경탈출 기도자에 대한 ‘공화국 도주죄’ 형량(5-8년 징역형)의 경감, ③정치범 구금, 반체제 인사에 대한 박해 및 서독이주 강요, 서독 이주자에 대한 동독방문 제한 등의 완화, ④동·서독 주민 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의 자유 확대 등 동독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서독정부가 이렇게 동독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11) 1970년 3월 19일 동독 에어푸르트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담에서의 브란트 총리 연설.

12) 1970년 5월 21일 서독 카셀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의 브란트 총리 연설.

동독이 동·서독 관계 정상화와 헬싱키 체제의 출범으로 체제유지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인권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한 데다 서독 헌법재판소가 서독정부에 동독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독은 1966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국제인권협약)에 가입, 1976년부터 동독 내에서도 효력이 발생되었다. 1975년 8월 1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바스켈 I), 인적접촉 및 여행자유(바스켈 III)의 존중이 의무화되어 있어 인권문제는 내정불간섭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1980년부터 1983년 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SCE 후속회의에서도 서명국들의 인권존중 의무가 다시 강조되어 회원국들에게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이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서독이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1973년 7월 31일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서독정부가 동독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5가지 원칙을 부과함에 따라 동독주민의 인권문제가 서독정부의 대동독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당(기사당, CSU)이 제기한 동·서독 기본조약의 위헌소청에 대한 판결에서 기본조약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독정부에 다섯 가지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첫째, 서독정부는 동·서독인의 서신, 우편·통신의 비밀이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둘째, 동독 측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동독주민의 방송청취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동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서독 내에 동독 측이 원치 않는 단체가 결성되어 동독 측이 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기본조약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

다면서 단체결성 금지를 요청하더라도 이 단체가 서독 기본법 질서를 준수하는 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독 측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동독 주민들의 이익표출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동·서독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장벽, 철조망, 死線(지뢰), 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 등은 기본조약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독 측은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모두 서명한 유엔인권협약을 근거로 국제기구나 국제행사에서 다음 세 가지 기본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독의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첫째, 인권 개념의 차이를 이유로 국제인권협약에 보장된 인권을 상대적 개념으로 규정하거나 인권보장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의 권리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둘째, 국제인권협약에 서명한 이상 다른 나라에게 인권실현을 촉구하고 강요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셋째, 인권을 계급적 권리로 생각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보장해서는 안 되며, 동독주민에게 이주불허 결정을 내리거나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서독 관계 정상화 후에는 원칙적 입장표시 보다는 동독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본법의 명제에 따른 원칙적 입장표시는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기하고, 실질적 인권개선 문제는 동독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라. 동독 측 반응과 대처

동독 측은 서방 측의 인권보장 요구를 동독 내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인식하면서 서방과 공산권간에는 인권개념이 서로 상이하여 서방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방측은 인권보장이 어떤 제도보다도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체제 반대자의 권리까지도 포함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중시한 반면, 공산국가들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구조가 인권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따라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보다는 사회·경제적 권리, 특히 노동의 권리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제기구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아예 대응치 않거나, 유엔인권협약의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국제기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보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특히 동독은 ①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인권개념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모든 인권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과 목표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며, ②CSCE 최종의정서 제6항에 내정불간섭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비난은 내정간섭이며, ③동독에서는 헬싱키최종의정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독정부는 1977년 및 1983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했다.

첫째, 평화의 유지가 국제인권협약상의 제반 규정을 실현하고 담보하는 불가결의 조건이며 현 국경선의 인정과 국경의 수호는 평화보장과 인권 실현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둘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은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통해서만 창출될 수 있으며 모든 인권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과 목표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보장된다. 셋째, 국제인권협약 제1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危害)가 될 경우 이주를 불허할 수 있으며 국경 탈출자에 대한 사살은 1982년 제정된 국경법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이다.¹³⁾ 넷째, 동독에는 정치범이 없으며,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시즘적이거나 군사적 선전행위 등 범죄에

13) 국제인권협약 제12조(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①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③위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및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양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측은 서독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CSCE 체제가 정착되는 것과 비례하여 가급적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동독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첫째, 국제인권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동독은 1977년 이후 국제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지도부도 자연이 인권탄압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CSCE 회의에서 인권문제와 정보교환 문제가 자주 거론됨에 따라 1970년대 후반 이후 서독 방송 및 TV 청취를 허용했으며, 1987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도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비밀협상을 통해 서독 측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정치범을 석방하거나 국경에 설치된 자동발사장치를 제거하거나 동독주민의 서독이주와 여행 허가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동·서독관계 정상화 이후 동독 정부는 서독과의 경쟁을 의식, 동독 주민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⁴⁾

4.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평가 및 시사점

가. 통일 후 대동독 인권정책에 관한 논란 내용

통일 후 독일에서는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 보수세력들은 사민당 정부가 동독 지도부와의 교류만을 중시, 「구걸을 통한 변화」 또는 「굴욕을 통한 변화」만을 추구함으로써

14) 1980년대 이후 동독은 사회주의 최고의 복지국가를 자처하면서 임금, 주택, 의료 등 복지지출을 대폭 증가시켜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7%로 경제성장을 3.6%를 훨씬 상회했다. 이러한 과도한 복지지출은 외채증가와 경제악화를 초래하여 1989년 동독 평화혁명 시 통일에 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써 동독 내 민주세력을 실망시키고 동독 내 반체제 세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¹⁵⁾

반면,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인권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그러한 대동독 인권정책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에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동독정권을 멸망시키거나 동독정부의 인권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화정책을 통해 동독정권을 안정시키고 점진적으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서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둘째, 냉전체제 하에서 동·서독간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서독이 동독을 압박한다 해도 동독 내에서 반체제 세력이 생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비록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셋째, 동독 정권과의 타협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동독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며, 유화정책을 통한 인권개선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독의 동독인권 정책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국내외적 환경도 정책내용과 정책성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독정부가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전에 주로 추진했던 것과 같은 원칙적 입장 천명과 국제적 압력 행사는 실질적 인권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며 서독정부가 동독 인권문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15) 공산통치 하에서 반체제 활동을 했던 에펠만 전 동독 국방장관은 분단 시 “서독정부가 동독의 인권 문제에 좀 더 공식적으로, 좀 더 명확한 어조로 관심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로 언급했다. 이수혁. 「통일독일과의 대화」.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274.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공개적 요구나 원칙론에 입각한 ‘정당한 분노’의 표시는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는 적은 반면, 상호관계를 경색시켜 교류·협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 동독의 인권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동독지도부에 대한 설득도 동독지도부가 인권보장 문제를 체제 존립문제로 생각하는 한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셋째, 동독지도부가 서방측의 인권보장 요구를 동독 내 반체제 세력 지원을 위한 공세로 생각하고 있고, 동독주민의 인권보장이 결국 반체제 세력을 양성하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 동·서독 간에 교류·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독 지도부가 자기 체제의 취약성을 더욱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불가피했다.¹⁶⁾

넷째, 경제협력을 동결시키는 전략은 소망스럽기는 해도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¹⁷⁾ 오히려 동독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이산가족의 방문·교류를 저해하며, 동독 측의 점진적 인권개선 노력마저 포기토록 할 가능성이 많았다.

다섯째, 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독과의 논쟁이 상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동독의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¹⁸⁾ 동독주민의 이주, 여행 및 상호방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독정부의 정책입지가 더욱 축소되었다.

여섯째, 동독인의 서독이주와 동서독 주민의 방문여행 확대, 동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인도주의의 실현이 동독주민들이 더욱 혜택이 가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이었고 동독주민 대부분도 이를 중요시했다.

16) 체제위기를 느낀 동독 측은 1987년 고르바초프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도 “남이 벽지를 새로 바른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소련의 개혁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17) 서독은 1960년대 초 경제관계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으나 체제위기를 우려한 동독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아 그 후에는 이런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다.

18) 서독과의 교류가 본격화되자 동독 정부는 1979년 6월 형법을 개정, 정치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서독정부는 동독 측이 체제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거나 서독의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점진적 인권개선 조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독은 동독 인권문제의 직접적, 공개적 거론은 자제하면서 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동독과의 비밀교섭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문제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독은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 설정해 놓았으면서도 동독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온건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곡예’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독주민의 인권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 상봉, 상호 여행 및 방문조건의 완화, 서독 TV·라디오 시청 등이 가능해졌고 서독 언론인의 동독 취재활동도 용이하게 되어 동독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둘째, 동서독 기본합의서 및 헬싱키 최종의정서 체결 이후 반체제 세력에 대한 동독정부의 태도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동독 평화혁명의 모태가 된 반체제 그룹의 생성이 가능해졌다.²⁰⁾

셋째, 국경지역 자동발사장치의 제거, 동독주민의 서독여행 확대,²¹⁾ 정치범의

19) 주독한국대사관. “동서독 간 인권문제 논란(II),”1993.1, p.5.

20)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조인으로 동·서간에 세력범위가 확정되고 공산국가들의 체제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동독정부는 반체제 세력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동독 평화혁명의 구심점이 된 민주세력의 생성이 가능해 졌다. 동독 평화혁명 당시 동독 내에 160여 개 그룹, 2,500여 명의 반체제 세력이 있었으나 동독지도부는 이들 간에 연계관계가 없는 데다 동독 비밀경찰(Stasi)이 이들 조직에 침투하여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반체제 세력들이 체제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단 민중혁명이 시작되자 이들 조직들이 평화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21)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서독이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고 동독의 여행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후 1983년 7,700명에 불과하던 서독으로의 합법 이주자가 1984년 34,900명으로 대폭 증가

석방, 동독 사형제도의 폐지 등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였다.

한편, 서독정부가 화해·협력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시 동독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동독정권의 인권침해의 기록을 위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유지한 것은 인권문제와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실용성의 기준만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다. 우리의 북한인권 정책에 주는 시사점

동독의 인권상황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데다 남북관계에 비해 동·서독 간에는 갈등과 긴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력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동독인권 개선노력이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을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분단 상황과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매우 다르고, 동독에서의 인권상황과 북한의 인권상황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경험은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북한 인권개선 문제는 우리가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대북한 인권정책은 실용성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인권문제는 분단 이후 서독 역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독정책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접근방법은 달랐지만 어느 정부도 이를 게을리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동독에 양보를 한 적이 없었다. 서독이 동독과의 화해·협력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도 통일보다는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의 완화”에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의 화해·협력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국제사회와 동독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했다는 점, 서독측이 1·2차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기본

조약에 인권조항을 삽입시켰다는 점, 동독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 보존소」를 유지했다는 점 등은 인권문제를 남북 화해관계의 유지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서독의 경우 동독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독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관계의 유지라는 명분에 밀려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의 가치 문제이고, 동포의 문제이고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며,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의 상태여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3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설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대북한 인권정책은 전략적 고려와 정교한 계획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동·서독 협력관계가 긴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체제위협을 느낄 경우 서독 측의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북한정권이 체제위협을 느끼는 한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공개적인 문제제기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칙적 문제나 선언적 문제 제기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기구에서 적극 제기하고 남북 간의 양자관계에서는 이산가족의 상봉 및 생사확인 등 실현 가능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선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현실적 방안도 없는 데다 북한주민이 기아로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단기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권리(human right)” 보다는 “인간적 필요(human needs)”의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당국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이산가족의 상봉, 국군

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물자 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도주의 분야에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²²⁾

셋째,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정책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북한 지도부의 체제 위기감을 완화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에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입안자이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시 서독 측 협상 대표였던 에곤 바르가 1963년 투징 신교아카데미 연설에서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을 제시하자 동독 측이 이를 격렬히 비난했으며, 바르는 이를 계기로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는 이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³⁾

넷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민간의 보다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보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인권 관련 단체와 이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처활동을 지연시키기에는 최근 탈북자의 인권상태가 너

22) 서독의 초대 아데나워 총리는 “인간에 대한 배려는 민족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콜 전 서독총리도 93.11월 개최된 연방하원 구동독 과거청산 특별 위원회 청문회에서 “돈을 주면서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기회를 넓히려 했던 노력은 공산정권 안정화의 위험은 있었으나 서독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술회했다.

23) 정상돈, 「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1999, p.75.

무 비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 국제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내 거주 탈북자의 정착과 복지에 더욱 국민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로(1997).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영윤·양현모(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서울: 통일부.
- 민족통일연구원(1995).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교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손기웅(2009).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 손상하 역(1991). 『독일현대사 1945-1986』, 서울: 까치.
- 염돈재(2010).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이수혁(2006). 『통일독일과의 대화』,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정상돈(1999). 『브란트·슈미트 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 주독한국대사관(1991). 『독일분단으로부터의 통일까지 역사』.
- _____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최성철 편(1996).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_____ (1998). 『북한인권론』, 서울: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통일문제연구협의회(199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서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_____ (1999).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통일연구원(1999).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원(1994).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2. 논문

- 김종호(1998).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활동사례”, 『자유평론』, 1998년 12월호, pp. 142-151.
- 민병천(2000). “탈북난민 북한 강제송환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자유평론』, 2000년 2월호, pp. 46-47.
- 염돈재(1996).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의 내막”, 『양지』, 1996년 여름호, pp. 58-61.
- 이승신(2011).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통일연구』, 제15권 제2호, pp.35-62.
- 이재원(201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조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 pp.25-34.
- 이주임(2009). “통일독일 선례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성호(1994). “북한탈출 동포의 처리방안: 국제법적 고려를 중심으로”, 『북한』, 1994년 6월호, pp.50-63.
- _____ (2000). “북인권, 더 이상 방치는 민족적 죄악이다”, 『자유공론』, 1999년 10월호, pp. 86-91.
- 주독한국대사관(1990).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태 기록 보존소”, 독일통일연구자료 100-49.
- _____ (1991).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II)”, 독일통일자료 100-191.
- _____ (1992a). “Brandt-Stoph의 Erfurt에서의 양독간 첫 정상회담”, 통독연구자료 100-132.
- _____ (1992b). “브란트-슈토프의 카셀에서의 제2차 정상회담”, 통독연구자료 100-135.
- _____ (1992c). “통독과정에서 CSCE의 의의”, 통독연구번역 자료 100-45.
- _____ (1993a).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I)”, 독일통일연구 자료 100-189.
- _____ (1993b). “동·서독간 인권문제논란(II)”, 독일통일연구 자료 100-191.
- _____ (1993c).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내독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제 수단”, 통독연구자료 100-216.

- _____ (1993d).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내독관계에 미친 영향”, 통독연구번역자료 100-67.
- _____ (1993e). “내독관계와 독일통일에 대한 Kohl 수상과 Egon Bahr의 증언”, 독일통일연구자료번역 100-73.
- _____ (1994f).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문서”, 통독연구 번역자료 100-85.

주제발표

1

독일 「중앙기록보존소」의 교훈과 시사

김 규 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독일 「중앙기록보존소」의 교훈과 시사

김 규 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 문제의 제기

= 북한 급변사태 대비의 필요성 =

김정일 사망이란 돌발사태로 마감된 2011년에 이어 올해 2012년 북한은 새로운 리더쉽 아래 세습체제의 조속한 안착을 도모하면서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아 ‘강성대국’,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포, 추진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혼돈과 충격의 한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버리고 만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참담한 인권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또 그래야 한다면 그 모습은 제도적 혹은 실정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명운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북한 실정을 보건대, 2005년~2010년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000달러선에 머물며(남한의 약 1/19 수준에 불과) 세계 최빈국수준으로 전락되어 있고, 화폐개혁의 실패 등 경제정책의 연이은 혼선은 북한 총인구의 1/4에 달하는 600만명이상을 식량지원필요의 극빈층으로 내몰아 자생력이 거의 상실된 상

태라 할 수 있다. 더욱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대상물이자 일종의 뇌물로 마약이 인식되면서 민간사회는 물론 군부에까지 마약류가 범람하고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기강해이, 허무주의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정권말기적 증상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12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이동전화수가 100만대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0만대가 급증한 수치인데다가 특히 평양주민 20~50대중 사용비율이 60%에 달할 만큼 정보의 통신량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1990년대 구 소련, 동구권 몰락의 충격 이후 최근 북아프리카로부터 불기 시작한 ‘자스민 혁명’, ‘중동의 봄’ 등 전세계적 민주화물결이 북한 사회내에 급속히 침투,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되고 있다. 1997년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UN의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에 이어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가 2011년까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 오고 있고, 2004년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제마저 신설되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정권창립 이래 전개된 무차별적 숙청, 주민성분 분류, 차별대우 등 비민주적 폭거에서 비롯되어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그 양태도 즉결처형, 생체실험, 불법체포·구금, 고문, 납치, 강제노동, 인신매매, 종교박해, 공민권박탈, 국내추방, 강제송환, 재산몰수, 통신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걸쳐있으며, 특히 평안남도, 함경남북도지역 총 6개 수용소에 정치범 약 20만명이 수감 중에 있는데 연좌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어린 소년, 노약자들마저 수용된 참상에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7일 철권독재를 휘두르던 김정일이 급사한 후 갓 서른에 불과한 아들 김정은이 그 후계자로 세습되어 외관상 통치시스템에 큰 변혁이 아직 노정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 보존 필요에 의해 상징적 구심점화되었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김정은 세습체제의 안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사회내 균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쟁상황에 준하는 권력투쟁과 대규모 숙청 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변환,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나아가, 체제안정과 내부결속을 위해 통제·감시의 손길이 더욱 강화되면서 인내, 희생을 강요당하는 북한의 민심이 민중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요컨대, 오늘의 북한은 옛 소련의 수용소군도(收容所群島, Gulag Archipelago)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황에 놓여있는 데다가 슬제니친이나 사하로프와 같은 내부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조차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절대독재정의 3대에 걸친 세습에 더하여 최악의 경지에 몰린 경제상황의 심각성은 이러한 참담한 상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예 예측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계기(契機)나 사건들이 체제의 변동을 유발하거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기회란 인위적 의도나 기대와 달리 가변적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고없이 갑자기 닥치게 될 터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서 그 성취만을 희구하여 왔을 뿐, 과연 통일이 성취된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한 분단의 공백(空白)을 원상 회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지 깊이 강구하지 못한 우리의 흠과 허물을 직시하고 이를 더 늦기 전에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독일 중앙기록보존소 설치의 배경

1961년 8월 동독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서베를린의 경계와 서베를린·동독지역 접경지대를 장벽과 철조망으로 막아버려 동서독사이의 경계선이 모두 봉쇄되면서 1959년 144,000명, 1960년 200,000명, 1961년 7월까지 50,000여명에 달하던 자유로의 행렬이 강제적으로 저지당하게 되었다. 그 후 동독지역에서의 탈출자들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자 이에 경악한 서독정부는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같은 해 10월 연방 및 각주 법무장관들이 동독측의 비인도적 범행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함으로써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장차의 형사소추를 가능토록 할 것을 결의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독립기관의 설치를 동독과의 접경지역이 가장 긴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5일 니더작센주 법무장관은 「각주 법무부의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설치령」을 공포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접경지역에서 가까운 소도시 잘츠기터(Salzgitter)시에 동 기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독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위협적 성격의 기관이 국경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듯한 형국으로 비쳐져 “서독의 재판고권(裁判高權, Gerichtshoheit)을 확장함으로써 동독인들의 헌법상 공민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박해하는 반국제법적 기관(völkerrechtswidrige Einrichtung)”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이 기관의 존재자체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1973년도에 들어서 양독간 「기본조약(Grundvertrag)」이 발효되어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본과 동베를린에 상주대표부가 각 설치되는 등 ‘정상적인 선린관계(normale gutnachbarliche Beziehungen)’가 계속 발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은 상주대표부의 대사관급 승격, 동독공민권의 인정과 더불어 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철폐를 서독측에 집요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동독정권의 위와 같은 입장은 이른바 「2개 國家論(Zweistaamentheorie)」에 입각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규범이라 할 위 기본조약의 체결이후 사실상 서로의 국가적 주권을 승인토록 하였던 것이므로 일면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서독의 입장은 「1개 民族論(“Zwei Staaten, aber eine Nation”)」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동독주민도 서독과의 관계에서는 독일인으로 보아 서독의 법원은 동독지역에서 독일인에 의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서독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또한 1973년 7월, “기본법(Grundgesetz)에서 규정하는 독일인(Deutscher)의 개념은 반드시 서독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독일인이 서독국가질서의 보호영역(Schutzbereich)에 다다른 한 언제든지 서독법원에 그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독의 법원판결에 대하여도 공서양속(ordre public)에 반하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3. 독일 중앙기록보존소의 조직과 임무

독일 중앙기록보존소는 기구조직상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고등검찰청에 소속하며 동 검사장(Generalstaatsanwalt)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주 법무부로부터 업무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 운영예산도 각 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중앙기록보존소는 형사소송법상 의미의 검찰청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한편, 관할을 불문하고 각 주의 사법경찰, 국경수비대 등 상대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당시 상시 근무직원 수는 현직 부장검사인 소장(Leiter) 아래 주로 관련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업무중점이 놓여져 있는 6~7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정권청산을 위한 특별수

사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보강되었다.

[한편 그 구성원들 전원이 동독정권의 지명수배서(Fahndungsbuch)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서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동독지역 일시 통행조차 차단되었을 만큼, 위 기관은 동독측 요원 또는 서독내 동조자 등에 의한 테러 또는 파괴활동의 가능성, 보존자료 유출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당초부터 고도의 보안장치가 강구되는 한편, 외부인에 대한 활동상황 공개도 극도로 꺼려서 1990년 10월 공식적으로 통일이 성취 된 이후 그 해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인이 한국 관리로서는 최초로 방문을 하여 그 실체를 국내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본임무는 서독정부로서 형사소추를 위한 지역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베를린과 동독지역내에서 행하여진 이른바 ‘폭력행위들(Gewaltakte)’에 관하여 그 정보, 상세한 사건내용, 그리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함에 있다.

위의 폭력행위라 함은,

첫째,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행하여지거나, 지시되거나 또는 묵인된 모든 형태의 살인행위(Tötungshandlungen)와 그 미수행위,

둘째, 정치적 이유로 인도주의의 제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선고한 테러적 판결들(Terrorurteile),

셋째, 동독의 정치적 폭력체제의 발현으로서 수사절차의 진행 중에 또는 형사재판상의 조사를 빙자하여 행하여지거나 형무소 수감자에게 자행된 가혹행위(Mißhandlungen),

넷째, 집단살해(Völkermord), 납치(Verschleppung), 정치적 무고(politische Verdächtigung)의 혐의가 있는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을 의미하고 있다.

국경지역에서의 발포행위로 인한 탈출자들 사상의 경우 실제의 발포자, 그리고 상위의 지시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동독지역내에서 수사나 사법절차상 은밀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동기의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지난하다 할 것이어서 중앙기록보존소에서의 정보수집도 매우 광범위하게 행하여졌다. 국경을 넘어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자들, 이주민들, 대가지불하고 석방(소위 'Freikauf')된 정치수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상호 방문자들이나 통신, 언론 등을 통한 우회적 사례수집, 정보기관이나 유관 민간단체들과의 협조 등 그 대상이 정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내용에 관련된 사람이 서독지역내에 와 있는 경우는 연방 및 각 주의 범죄국(Kriminalamt)을 비롯한 사법경찰관서에, 관계사건이 국경지역 발포행위인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에 질문서의 기본양식을 각 송부하여 내사(內査, Vorermittlung)를 지시하며 그 조사결과가 통보되어 충분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다.

1961년 11월 중앙기록보존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통일 직전인 1990년 6월까지 했수로 근 30년동안 자료 입력한 건수는 총 41,390건이며 이에 관련된 자들로서 명부에 수록된 총인원수는 약 80,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10,000명은 폭력행위에 관여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혐의자들이고, 나머지 70,000명은 피해자들과 관계 증인들이다. 특히 위 혐의자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의 판·검사들이라 하는데 이는 정치적 이유에 기한 판결의 사례가 많이 포착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 법치국가이념을 관철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주의법관념에 경도되어 체제수호에 앞장섰던 범조인들의 존재라고 간주하여 그 관계자료 수집에 진력한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참고로 1979년부터 1990년 6월까지 입력되어 보존하였던 폭력행위별 건수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행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6.30.
살인행위	52	76	62	60	48	31	32	34	39	29	28	29
가혹행위	4	2	3	1	2	2	0	1	5	5	6	6
정치적 무고	157	82	116	170	142	285	328	127	121	35	28	24
정치적 이유에 의한 유죄판결	1027	900	1229	1339	940	1857	2300	1418	1157	1163	1808	1043
계	1240	1060	1410	1570	1132	2175	2660	1580	1322	1232	1870	1102

4. 동서독 통일이후의 역할

독일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그 동안 음지에서 묵묵하게 동독지역에서의 정치적 폭력행위 사례를 기록, 보존하여 왔던 중앙기록보존소의 진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드러났다.

첫째, 연방주의(Föderalismus)에 의거 동독지역에서 부활하게 된 5개주(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의 사법체계를 다시 구축함에 있어서 과거 전력이나 행적여하에 따라 재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판·검사들의 선발기준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법관, 의원들로 구성된 중앙 및 각 지방의 법관선발위원회(Richterwahlausschuß)에서 옛 동독의 1,400여 판사들과 1,000명에 달하는 검사들 대상으로 재임용여부를 심사하였는데 폭력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던 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배제되었다.

둘째, 동독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권(復權, Rehabilitierung) 또는 피해보상(Entschädigung)을 받거나, 부당한 법원 판결을 재심(Überprüfung)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1990. 9. 29. 발효)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소추처분이나 그 밖의 법치국가이념 내지 헌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공산당불법정권의 희생자는 복권과 더불어 상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동독법원의 판결과 그 집행이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셋째, 정치적 폭력행위에 관여하였던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상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동독 공산당 서기장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를 구속하고자 1990년 12월 (서독)형법을 적용,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베를린장벽 설치이후 약 190명의 희생자를 내게 한 배후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중앙기록보존소에는 호네커가 국방위원회 제1서기 또는 당서기장 자격으로 국경탈주자들에 대한 총기사용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관련 자료가 수록, 보존되어 있었다.

참고로, 통일이후 옛 동독정권의 불법청산을 위하여 베를린주 제2지방검찰청에 ‘정권범죄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1999년 말까지 가동하면서 약 22,000건에 달하는 사건의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그 중 880명이 기소된 바 있는데, 통일 10주년체인 2000년 10월 3일을 기하여 모살(謀殺)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완성시킴으로써(통일후 특별입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구범죄를 계속 소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바 있음) 사실상 사면적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불법청산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5. 역사적 교훈과 시사

옛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는 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법치국가적 질서확립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가해의 수단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또는 동독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그러한 자연법적 질서를 어긴 소위는 반드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을 위한 인권보호적 기능(Menschenrechtsschutzfunktion)을 함과 아울러, 가해자들로 하여금 그 폭력행위를 스스로 억제토록 하기 위한 경고적 기능(Abschreckungsfunktion)을 수행하고자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양극의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의 대립구조 아래서 분단이 심화되고 고착화되었다는 기본적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분단의 경위가 서로 다르며 동족상잔의 체험이 없고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마저 상이한 독일의 경우를 우리가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양립하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연방제적 통일도 바라지 않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당연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공한 모델이자 조국재통일의 선경험자인 독일의 경우를 깊이 연구하여 귀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입법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미국에서 2003년 처음 입안되었던 법률은 그 전년도에 제정된 「북한난민구호법(North Korean Refugee Relief Act)」에 연원을 둔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이었으나 정권붕괴 의도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10월에 들어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라는 다소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예산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여 2006년 6월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에서 발의하였던 북한인권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종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 4건이 2009년 11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란 통합중재안으로 단일화되어 다음 해 2월 동 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못한 채 18대 국회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 골곡맞았던 동 법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가칭「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과연 둘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둔다면 이를 어느 부처 또는 기관 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다. 결국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 담당기구’를 두는 것으로 관계부처간 최종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통일후 체제불법청산이라는 사법적 기능의 당위론에 상응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북한의 인권문제는 - 과거의 독일과 달리 - 단지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및 피해자복권 등 구제 조치를 위한 관련자료 확보에만 중점이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탈북자송환, 제3국 탈출자에 대한 처우, 재산권 회복, 정착지원,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성격의 것이란 점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부처간 합의안에서와 같이, “법무부에서 북한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수집·기록·보존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에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 사이에 ‘기관이기주의’를 떠난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국가기구를 새로이 구성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산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의) 기록, 보존’이라는 용어가 과연 문법에 올바르게 부합되는 것인지, 나아가 그 설치형태 및 운영주체 여하에 따라 ‘소(所)’라는 명칭을 그대로 원용해도 문제가 없다 할 것인지, 또한 행정적 집행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수집·보존되는 자료와 그 취합과정에 공신력은 어떻게 부여되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아울러 감안하여 기구 명명(命名)의 점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관한 로마규정”(2002. 7. 1. 발효)을 이행입법화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공포, 시행)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식량·의약품 접근박탈, 노예화, 강제추방·이주, 불법감금·고문, 성적 폭력 등 ‘인도(人道)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한 내국인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조). 따라서 우리 실정법체계의 사실상 규범적 타당범위에 관한 논란을 떠나, 북한지역에서 행해지는 정권차원의 폭력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능성은 이미 열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공소시효, 형의 시효에 관한 형사법규정의 적용이 배제(제6조)됨에 따라 증거자료의 수집, 확보와 그 신빙성 내지 증명력 부여를 위해서는 국가소추기관의 관여가 논리적 귀결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전제로서 북한지역에서의 구체적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 기록의 보존 작업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

고 접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독립적이고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지닌 국가위원회에서 2011년 3월 15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공식 개소하여 만 1년간 운영하여 왔음은 - 북한인권에 관한 입법적 대응의 문제를 떠나 - 향후 북한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키 위해 진일보한 국가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준전시(準戰時)의 긴장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동시에 개선하는 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또한 지난 60여년 동안 3대에 걸친 세습정권 유지를 위하여 숙청, 교화 등의 명목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가해진 탄압과 인권침해의 무수한 사례는 과거 우리 정부의 정통성 시비와 민주화과정에서의 진통,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양가주망 정책 등으로 인하여 그 실상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상당 기간 가려져 오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인권의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은 이제는 거슬릴 수 없는 범세계적 명제이자 정언명령(定言命令)으로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내재적 접근, 문화적 상대성 주장이 극복되어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63조)고 천명하여 국가와 민족 우선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유권의 제도적, 내재적 제약이 당연시되는 것이 북한 특유의 인권관(人權觀)이라고는 하지만, 북한 스스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핵심적 인권조약들(human rights treaties)에 가입한 당사국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멀지않은 장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비원이 실현될 때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각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의 결집과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당시 인권유린의 책임규명 문제조차 아직껏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듯이, 북한지역내에서의 인권탄압 해결의 문제는 남-북, 북-북 갈등의 심각한 한 요인으로 격렬한 논쟁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도 진행 중인 인권탄압의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어 그 기록이 정리, 보존, 활용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엄정하고 정확한 기록, 보존을 위한 기준과 분석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또한 있다.

오늘의 뜻깊은 세미나를 계기로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터잡은 통일이 이룩될 훗날, 통일정부의 재판고권에 근거한 불법청산과 원상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어 사물의 본성 내지 조리에 기초한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질의 및 응답

플로어 참석 자유질의 및 응답

주제발표

2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경과 및 신고사례 보고, 발전방안

김 태 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경과 및 신고사례 보고, 발전방안

김 태 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1. 신고센터의 설립 경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2. 3. 15.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기록관’)」을 설치하여 공식운영에 들어간지만 1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북한인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단편적인 증언이나 기록들을 수집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피해자별로 개별화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보존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만을 훨씬 웃돌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선을 넘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은 줄을 잇고 있고, 무리한 중국의 강제복송 조치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탈북사태는 의미심장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체제 안에 분명 식량난을 초월하는 인권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설치한 것은 인권전담기구로서 당연히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통일 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국제 인권규범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그 위반사례의 체계적인 수집·기록·

보존을 통해 그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는데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복권, 피해보상, 재심 등 남북한 사회통합, 인재등용 제한, 인권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서독은 1961년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를 설치하여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4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독립적이고 유엔권고에 의하여 설립된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인권위에서 축적되어지는 각종 북한인권 침해 자료들이 북한인권 정책 개발과 UN 등 국제기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북한당국이 더 이상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시도된 어떠한 방안보다도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2. 신고사례 보고

인권위는 그 동안 2만여 북한이탈주민들 중 주소가 파악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우편엽서를 동봉한 인권위원장 서신을 보내어 격려와 인권침해 신고를 안내하였으며, 전화신고 접수는 물론 상담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직접 인권위원이나 조사관이 수소문하여 방문 등을 통해 인권침해사례를 접수하여 왔다. 인권위는 그밖에도 각종 출판물, 언론기사, 북한인권 운동 관계자의 발표자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인권의 범주에는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재외 및 국내 탈북자의 인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간 분단과 인도주의

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침해사례도 위 범주에 따라 분류·정리하였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접수된 신고센터의 북한인권침해신고 현황을 보면 2012. 2. 28. 현재 81건 834명을 접수하였는바, 주요 내용 별로 보면, ①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11명), ②교화소 등 구금, 조사과정에서의 고문피해(70명), ③6.25국군포로 피해자(57명), ④납북 피해자(10명), ⑤이산가족 피해자(683명), ⑥기타(3명)-오길남 가족, 중국 강제복송 관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외부에 공개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안전과 명예 보호 또는 가해자측의 범행 은폐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이름이나 피해사실의 일부를 불특정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인 반인도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표준모델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 각종 국제인권규범, 특히 북한도 비준·가입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8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00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ICRC), 1990년」등과 국제적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등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 별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구성요건화 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보존토록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권위는 중간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지난 2011. 11.경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을 관계 국가기관에 권고한 바도 있다.

3. 발전방안

인권위 신고센터 및 기록관의 지난 1년간 실적을 만족할만하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북한인권 업무에 관한 열악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신고센터의 취지를 살려 그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정책수립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된 개별 사건에 대한 참고인, 참고자료 등 보완조사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리가 완료된 자료들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는 물론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예방·억제하는 교육·홍보 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온몸으로 겪은 증인들로서 이들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규입국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당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하나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또 탈북자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여건 역시 취약하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인권위에 신고를 위해 출두하여 장시간 조사에 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물질적 지원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막대한 숫자의 탈북자들을 찾아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의 조사인력 확충과 예산의 뒷받침도 절실하다.

인권위는 이번 신고센터 및 기록관 설치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민족을 대신해 역사의 공소장을 작성한다는 국가적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이다. 그 동안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북한주민과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역사적으로 기록·보존함으로써 이들

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신고센터와 기록관이 북한정권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억제하고 자제토록 하는 인류 양심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나아갈 길

- 토론문 -

이 재 원
(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먼저, 어렵게 태어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신고센터라고 함)이 첫돌을 맞은 것을 축하드리고, 그간 센터의 탄생과 걸음마를 위하여 애쓰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 김태훈 위원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발제문에서 자세히 보고하셨듯이 신고센터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의 접수, 조사, 기록 및 보존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하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기초자료를 생산·축적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찰쓰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선례를 참고하였고, 17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조차 통과가 난망인 북한인권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입법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입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정상화하려는 다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본격적으로 발족하기까지의 기간에라도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가혹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들이 그 피해와 한을 해소할 곳이 없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관한 증거들이 흩어져 사라지기 전에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신고센터의 운영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센터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그 존립과 활동을 담보할 충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인적 물적 기반이 태부족하여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가 지난 1년간 834명으로부터 침해신고를 접수하여 조사와 자료수집을 하고 기록을 보존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고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기록은 기록 자체로서도 큰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고센터의 발전방안에 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권의 가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므로 18대 국회가 입법을 외면한다고 하여 이 법의 제정을 단념할 수는 없으며, 입법이 될 때까지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밖에 발전방안은 김태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으므로 이에 동감하며,

다만, 인적 물적 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충분한 활동에 제약이 있다면 자세한 조사와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침해신고 사실의 접수와 정리, 기록만이라도 철저를 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완전하나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챙겨놓으면 후일 이를 보완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발전방안

- 토론문 -

조 명 숙
(여명학교 교감)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하 ‘기록관’)」의 설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기대하는 바는 크다. 국가의 통제 아래 일상적인 인권침해로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북한주민들과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북한을 탈출하여 공화국을 수치스럽게 하였다는 죄명으로 더 큰 인권유린을 당했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태훈 위원장님의 표현처럼 “역사적 공소장”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신고센터”나 “기록관”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한 증언이나 기록들을 국가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명학교 뿐 아니라 일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서는 여러 단체와 연구자들로부터의 조사 청탁으로 힘이 들기도 하고, 중복되는 조사들로 인해 피조사자들의 무성의한 참여로 연구나 조사의 결과들이 신뢰도가 낮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일이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수집이 이 문제 뿐 아니라 통일사회 기반 마련, 남남 갈등해소 등에 직·간접적인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므로 전문 조사관

들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을 가려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신고센터”나 “기록관”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와 남한 사회 정착하면서 기억의 소멸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태훈 위원장님의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일부 하나원 더 나아가서는 남한 입국 초기의 합동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시기부터 “신고센터”나 “기록관”의 존재를 알리고 해당 기관에 상주하면서도 진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합동 조사기관에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며 타인이 조사 받는 상황에는 무료를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신고센터”나 “기록관”의 전문 조사관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에 앞서 태어나면서부터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 조직적인 인권적 제약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라는 뜻 자체도 이해를 못하기에 무엇을 침해 받았는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들이 권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권리」등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 보편적인 인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인권탄압자, 인권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위나 민간

단체에서 발표하므로 인권유린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운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이런 활동이 북한에 전해졌을 때에는 조직적 인권유린 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의 잔혹함을 경감시켜 인권유린을 억제하고 자제토록 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동포의 인권개선에 바치는 큰 선물 - 토론문 -

주 성 하
(동아일보 기자)

이번에 탈북자 31명이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사건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이들의 복송됨에 따라 복송반대 여론은 점점 식어질 것이지만 끌려간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야 한다. 그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다행히 복송된 일부 주민들은 기초적인 신상정보를 남겼다. 이를 활용해 북한에 이들의 신병확인을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북한도 마음대로 처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기록 보존적 역할을 수행할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탈북자로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중요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몇 배로 크게 느낀다. 신고센터는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이다. 다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지배계층은 외부에서 불 때는 한 배를 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정은 체제의 운명에 대해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초조한 자들에게 당신들의 악행이 기록되고 세계가 주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그 경고의 의미는 동독의 사례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왜냐면 동독은 북한에

비한다면 붕괴의 불안함이 적었고 또 악행의 수위도 훨씬 낮았다. 북한의 범죄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신고센터를 수립해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당신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고무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누구하나 앞장서 나서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다. 결사반대하는 통합민주당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문제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은 두고두고 이에 원성을 터뜨릴 것이며 남북한 주민통합에도 부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함에 있어서 한국의 정보기관 조사기관과 하나원에서 곧바로 인권 침해된 사례를 진술 받는 정부적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험상 이 단계에선 탈북자들이 정확하고 자세히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려 하고 있으며 또 북에서 나온 지 얼마 안돼 자기가 당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려 한다면 품과 비용도 많이 들고 참여도도 크게 떨어진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커다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정략적 판단 하에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정략적 판단에 따라 탈북자들을 죽음의 북한으로 복송시키는 중국과 다를 점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우리 정치권에게 과연 중국을 향해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북한인권침해센터에 북한 인권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범죄의 공범자로 고발하고 싶다.

질의 및 응답

플로어 참석 자유질의 및 응답

북한인권침해신고 주요 사례

- 정치범 수용소
- 교화소
- 조사과정에서의 고문피해
-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정치범 수용소

■ 요덕 정치범 수용소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정광일

다. 피해자

○ 신고인

○ 별지 수감자 명단 기재 피해자(별도 공개)

라. 가해자

○ 국가안전보위부장 ○○○, 제15호 관리소장(요덕 정치범수용소장) 및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2000. 4. 6.부터 2003. 4. 12. 석방되기 까지 요덕 정치범수용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1999. 7. 22. 간첩혐의로 연행되어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7개월간 구금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2000. 3월 어쩔 수 없이 허위로 간첩혐의를 시인. 이후 재판 없이 2000. 4. 6일 요덕 수용소 독신자 혁명화구역 서림천 지역으로 보내짐.

(2) 강제이주(수용소의 연혁과 구성원 및 일상생활)

(가) 요덕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 구역은 원래 요덕군 대숙리 백산 구역에 있었으나, 강철환, 안혁 등의 폭로로 1999. 10.경 위 혁명화 구역을 폐쇄하고 일부 정치범들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석방하였음. 이어서 1999. 11.경 새로이 인근 서림천 지역에 혁명화 구역을 신설하여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음. 수감자들은 주로 북한에서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체제를 비판한 독일이나 중국 등지 유학생, 말 반동 등 정치범이 있었음. 신고인은 2000. 4. 6.부터 2000. 4. 말경까지는 신입반, 2000. 5.경부터 2000. 9.경까지는 건설소대, 2000. 10.경부터 2002. 6.경까지는 2작업반(농산반) 1분조 조장으로, 2002. 7.경부터 2002. 9.경까지는 1작업반(농산반) 1반조 조원으로,

2002. 10.경부터 2003. 4.경 석방될 때까지는 1작업반 4분조 조장으로 복무하였음. 각 분조는 25-40명으로 구성되고, 각 분조는 다시 3인의 소조로 구성되어 역시 조장 관리 하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해야 하고(화장실도 함께 가야 함), 1사람이라도 눈에 띄지 않은 채 15분이 경과하면 보고해야 할 정도로 감시체제를 갖추었음(화장실도 같이 갈 정도로 감시체제를 갖추었음).

(나) 당시 신고인이 요덕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목격하였던 정치범 피해자들의 명세는 별지 수용자 명단 기재와 같이 187명에 이름.

한편 수용소 일과는 다음과 같다.

04:00(하절기)/05:00(동절기)	기상
05:30-07:00	조기 작업
07:00-07:30	아침 식사
08:00-12:00	오전 작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20:00	오후 작업
20:00-21:00	저녁 식사
21:00-22:00	정치 학습
23:00	취침

(3) 박해 및 노예화, 비인도적 행위(식사 등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가) 아침 식사는 옥수수에 두부콩을 넣은 밥 한 그릇에 시래기국 한 그릇뿐이며, 정치학습 시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공부시키는데 학습과제를 외우지 못하면 외출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함.

(나) 하루 작업량은 김매기 하루 정량이 350평이며 풀베기는 800kg으로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양으로 수감자 대부분은 허약자이기 때문에 하루 과제를 수행하는 수감자는 별로 없음.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하면 식사량도 줄어, 예를 들어 하루 과제를 50%밖에 수행 못 하면 식사 배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 600g의 식량을 배급받는 수감자는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감.

- (ㄷ) 겨울에 통나무를 베고 잘라 쇠줄로 묶어 끌어 나르는 일이 제일 힘든 작업으로 직경 30cm, 길이 4m 이상인 통나무를 하루에 4번씩 약 4km 거리를 끄는 것이 하루 작업량으로 산길이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남. 나무를 끌다가 부상당한 수감자들은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해 식사 배급량이 줄어 별지 피해자 명단과 같이 송○○, 차○○, 김○○ 등 다수가 영양실조로 사망.
- (ㄹ) 4월 옥수수 농사철이 되면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먹지 못하게 종자에 인분을 버무려 파종을 하는데 박○○과 같이 굶주린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물에 씻어먹고 대장염에 걸려 죽기도 함. 인분을 옥수수 포기에 주는 작업을 하면서는 수감자들이 먹는 밥그릇에 인분을 퍼가지고 뿌리게 하며 수감자들은 인분 범벅이 됨.

(4) 비인도적 행위

- (ㄱ) 수용소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이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감자들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자들도 있음. 겨울에 수감자들에게 나무를 쇠줄로 묶어 4km 거리를 끌고 내려오게 하면서 선착장에 옥수수떡을 상으로 놓고 경쟁을 붙여 수감자들끼리 밀치다 거리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위부원들은 이를 보며 재미있다고 구경거리로 삼음.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수감자를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 하루 작업량을 못 채우게 하여 식사 배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굶겨 죽음. 철저

한 약육강식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바로 요덕수용소임.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있었는데 밥을 빼앗긴 아들 이름은 김○○였음.

(나) 죽은 수감자 시신은 널빤지로 대충 관을 만들어 팻말도 없이 묻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됨.

(5) 살해

2001. 8. 28. 최○○(47세)가 풀베기를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산열매를 따 먹으려고 조를 이탈한 것을 도주로 몰아 공개총살을 했다. 2003. 3. 5.에는 김○○(37세)이 도망치다 잡혀 역시 공개총살을 당했음. 김○○은 개에 물려와서 이미 몸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반 죽음상태였다. 10m 밖에서 총살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너무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총을 맞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두개골만 쪼개졌고 끄적했음.

다. 석방 및 한국행

2003. 4. 12일 요덕수용소에서 석방됨. 2003. 4. 30. 탈북하여 2004. 4. 22일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 온 이후로도 요덕수용소에 잡혀가는 악몽을 자꾸만 꾀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임.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진술
-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한 후 탈북하여 입국한 김○○, 이○○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이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7조(노동권), 제10조(가족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 개천 정치범 수용소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신동혁

다. 피해자

○ 신고인

○ 신경섭(아버지, 1946.생), 장혜경(어머니, 사망), 신희근(형, 사망)

라. 가해자

○ 제14호 관리소(개천 정치범수용소) 소장 ○○○, 담당 보위원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1) 일시 및 장소

1982. 11. 19.부터 2005. 1. 2.까지 평남 개천시 외동리에 위치한 개천 정치범수용소(14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2) 14호 관리소의 위치, 구성 등

14호 관리소는 1965년 평남 개천과 봉창을 포함하는 지역에 설립. 1983년 대동강을 경계로 위로는 14호 관리소, 아래(남쪽)는 18호 보안성 관리소로 분리됨. 관리소 수용인원은 5만명 정도이고, 본 마을과 1호골안·2호골안·3호골안·4호골안·5호골안으로 구성되고, 초소가 전기 철조망이 쳐진 관리소 경계 50m에 하나씩 설치되어 외부와 완전 차단. 신고자는 평남 개천시 외동리 8작업반에서 출생. 집 1채에 4가구가 함께 살고 전체 160가구 정도. 가구당 보통 어머니와 자식 2인으로 구성.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 (가) 아버지 신경섭은 평안남도 문덕군 룡북리에서 12형제 중 11번째로 태어남. 1965년 어느 날 아침 새벽 안전원들이 들이닥쳐 모든 가구들을 옮겨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등 가족 모두를 트럭에 태우고 하루 종일 달려 개천 14호 관리소 완전통제구역에 수감. 수감이유는 6.25 전쟁 때 아버지 형제 중 첫째(신태섭)와 둘째가 월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됨.
- (나) 수감된 순간 가족은 모두 갈라져서 이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함. 아버지는

같은 여성 정치범인 장혜경(1950. 10. 1.생)과 ‘표창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신고인은 1982. 11. 19. 태어났고, 그 순간부터 신고인도 정치범이 되어 관
리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음.

(2) 박해 및 노예화

(가) 인민학교 때 아래의 10대 법과 규정을 모두 외워야 하고 외우지 못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았음. ① 도주하면 즉시 총살, ② 무단이동하면 즉시 총살, ③ 도
독질하면 즉시 총살, ④ 보위원 지시에 불복종하면 즉시 총살, ⑤ 외부인을
보호하면 즉시 총살, ⑥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 행동시 즉각 신고해야 함, ⑦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면 즉시 총살, ⑧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하면
즉시 총살, ⑨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총살, ⑩ 관리소의 법과 규정
을 어기면 즉시 총살.

(나) 관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죄인이라는 신분의식을 심어주고 상
호감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수용자들에게는 관리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나 저항의식이 생기지 아니함. 보위원 자녀들도 수용소 학생들을 지주나 중
과분자 또는 혁명의 원수로 생각하고 눈에 띄기만 하면 행패를 부림. 1992.
3.경 인근 보위원 마을을 지나갔다고 20여명의 보위원 자녀들이 30여명의 수
용소 학생들에게 돌맹이를 마구 던져 모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선생들은 묵
인하였음.

(다) 표창결혼

일을 잘 하고 상호감시도 잘하면 남녀간 표창결혼을 시키는데, 표창결혼이
되면 남편은 혼인하기 전과 다름없이 자신이 일하는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
하고, 아내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농산반에 집을 배치 받아 자녀가 인민학
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지냄. 처음 5일 정도는 부부가 같이 지내고, 그 이후

는 일을 잘 하면 1달에 1번 정도 남편이 아내 집에 와서 묵을 수 있음. 인민 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때부터 혼자 생활.

- (라) 산전 산후 휴가가 있으나, 아이 낳기 전 보름과 아이 낳은 후 1달 정도만 휴식시간이고, 그 후에는 남자와 똑 같이 작업에 종사하여야 함. 아이를 돌 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 아이를 업고 일하여야 함. 병원은 있으나 보위원인 의사 1명과 죄수 중에 선발된 간호원 1명과 식염수뿐,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함.
- (마) 집은 시멘트로 지어졌고, 장판이 없어 날바닥에서 기거. 1일 배급량은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700g만 주었음. 부식으로는 염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음. 인민학교(5년 과정) 학생은 1인당 300g, 고등중학교(6년 과정) 1-4학년은 400g, 5-6학년은 500g 배급. 늘 배가 고파서 쥐 등을 잡아먹음. 1996년경 배가 너무 고파 땅을 보면서 걷다가 소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나온 강냉이 알 세알을 발견하고 대강 닦아 먹은 것이 운 좋은 날일 정도로 항상 굶주림.
- (바) 매월 초 1일과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및 설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중노동(휴일도 작업반 정리나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낮을 뿐 일은 계속). 일의 강도나 작업연령은 건강한 사람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차이가 없음. 65세 이상된 노인들은 따로 모아서 작업반을 만들어 죽을 때까지 노동.
- (사) 5년 과정의 인민학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하고, 그 이후 오후 7시까지 노동. 수업은 국어·수학·체육인데, 국어는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만, 수학은 덧셈·뺄셈만, 체육은 달리기와 철봉 매달리기만 가르침. 12살 때인 1993년부터 고등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6년 동안 수업은 없고 매일 김매

기, 가을걷이, 거름 나르기 등 노동만 함. 아침 7:30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고, 저녁식사 후 9시부터 10시까지 생활총화 하고 수면. 하루에 정해진 양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과제를 끝마친 조에 자신의 밥 절반 이상을 주어야 함. 중학교 1학년인 1993. 6. 중순경 막장(갱)에 노력동원(지원)을 나간 것이 제일 힘들었음. 2t 가량의 탄을 광차(탄차)에 싣고 막장 밖으로 나오는 일을 하다가 같은 조 학생(문○○)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함. 1998. 6.경부터 약 1년간 대동강 내 중형발전소 건설에 노력동원 되어 1일 12시간씩 일하며 매일 3-4구의 시체가 나오는 노동재해를 목격. 1998. 7. 중순경 장마철 상류의 물이 범람하여 수백명의 인부(학생 포함)가 모두 익사하여 직접 시체를 처리함. 1999. 3.경 콘크리트 독이 무너져 미장공 3명과 보좌하고 있던 15살짜리 여자아이 3명과 남자아이 2명이 모두 사망하는 것을 목격.

(3) 고문

- (가) 1996. 4. 6. 새벽 신고인의 어머니(장혜경)와 형(신희근)이 도주를 기도하다 체포되자 공모한 혐의로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수용소의 지하 감방으로 끌고가 자백을 강요하면서 옷을 전부 벗긴 채 쇠사슬로 천장에 매달아 숯불로 등과 허리를 태우는 불고문을 가하였고, 그 불고문으로 큰 화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살아나 7개월만인 같은 해 11. 29.에야 석방됨.
- (나) 아버지(신경섭)도 같은 기간 지하 감방에서 고문을 심하게 받은 듯,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다리가 떨쩍하였는데 나왔을 때 보니 고문을 받고 부러진 다리가 잘 붙지 못하여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정강이)이 밖으로 휘어져 있었음.

(4) 비인도적 행위

- (가) 학교 선생은 모두 보위원이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계획한 양의 일을 못했을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학생들을 구타함. 1989. 6.경 인민학교 2학년 때 수업시작 전에 소지품 검사에서 8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 주머니에서 밀 이삭 5개가 나오자 지시봉으로 머리를 마구 구타하여 당일 죽게 함.
- (나) 신고인은 1996. 11. 29. 어머니와 형이 공개처형된 후 1997. 3.경 바뀔 때까지 4개월간을 학교 선생으로부터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소변도 화장실에서 보지 못하게 하여 그냥 바지에 싸야 했음.
- (다) 변○○라는 학생은 1998. 12. 추운 날씨에 발전소 건설 노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퐁퐁 언 철근에 혀를 내밀라고 하여 혀가 철근에 얼어붙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혀가 괴투성이가 됨.
- (라) 1999. 12.경에는 영하 15-20도의 추운 날씨에 지게를 지고 거름을 나르던 노인 4명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조금 쉬었다는 이유로 신발과 바지를 벗기고 팬티 바람으로 2시간 동안 언 무릎을 꿇고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저녁 7시가 되어서는 휴게실 안의 구들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히고 사람이 델 정도로 장작을 뜨겁게 계속 때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죽게 하였음.
- (마) 2001. 2.경 석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한 송○○이라는 사람의 시체를 땅이 얼어 매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돼지거름에 넣어 재래식 비료로 처리하였음.
- (바) 2004. 11. 어느 날 오후 11시경 갑자기 보위원 2명이 나타나 이를 잡는 약이라며 20kg짜리 물통을 두 개씩 주어 여자 5명, 남자 7명을 목욕시킴. 그 결과 1주일 후 모두 고열로 수용자들이 죽어가자 트럭 한 대가 와서 모두 실어갔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생체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됨.
- (사) 2004. 여름 어느 날, 피복공장 수리공으로 일하던 중 재봉기 받침대를 떨어뜨

려 받침대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담당 보위지도원의 지시로 총작업반장이 신고인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식칼로 내리쳐 절단함.

(5) 성폭력 및 성적 노예화

- (가) 신고인이 10살 때인 1992년 저녁 7시경 어머니가 보위지도원 사무실에서 청소를 한다고 불러가 성노리개로 굴욕 당하는 장면을 목격.
- (나) 1996. 9. 어느 날 신고인의 숙모(삼촌 신○○의 아내)와 사촌누나 신○○(1980년생)이 도토리를 주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경비대 2명을 만나 누나가 알몸으로 성폭행을 당한 채 기절하였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숙모는 정신이 돌아서 그 다음날 새벽 길바닥에 앉아 통곡을 하다가 어디론가 잡혀간 후 소식이 없음.
- (다) 관리소에서는 공식적인 허가 없이 임신을 하거나 수용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즉시 사라짐. 이렇게 임신한 처녀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음. 피복공장의 경우 담당 보위지도원은 임의로 수용소 여자들 7명 정도 뽑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자기 방 청소를 시키면서 성노리개로 삼았음. 피복공장에 있는 1년 동안 여자 3-4명이 임신해서 실종되었고, 2004년 학급 동창생인 박○○(22세)가 보위지도원 사무실 청소담당으로 뽑혀 청소를 시작한지 4달 후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실종된 것을 직접 목격.

(6) 살해(공개처형)

- (가) 수용소 7작업반 돈사 골안에 있는 공개사형터(2000년 이후에는 대동강 기슭 본마을 공터에서 공개처형 집행)에서는 1년에 2-3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데, 신고인이 지하감방에서 석방된 날인 1996, 11. 29. 신고인과 신고인의 아버지 신경섭이 지켜보는 맨 앞에서 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교수형에, 형은 총

살로 집행하였음.

(나) 1999.경 수용소 공개처형장에서 여자 1명과 남자 3명이 도둑질과 말 실수로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

다. 수용소 탈출 및 탈북 그리고 한국 입국

2004년 초부터 평양 출신 ○○○을 사귀며 바깥세상을 알게 되고, 의식이 깨어 탈출생각을 하게 되었음. 2005. 1. 2. 전기 철조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 2005. 2. 2. 중국으로 탈출. 2006. 8.경 한국 입국.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저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2007. 10. 20. 북한인권정보센터)
-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출신 탈북자 ○○○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이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7조(노동권), 제10조(가족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아동권리협약(ICRC) 제2조 내지 제9조(아동권의 보호), 제23조(존엄성 보장), 제24조(건강권), 제27조(생활권), 제28조(교육권), 제32조(착취 금지), 제37조 및 제39조(고문 금지 및 신체의 자유), 제40조(사법절차상의 권리)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 전거리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5. 27

나. 신고인

○ 김광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보안서 예심과 구류장 예심원
○○○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의원(인민참심원)
○○○,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회령시 검찰소 검사 ○○○, 중앙재판

- 소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재판소 변호사 ○○○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소장(상좌) ○○○, 정치부장 ○○○, 교화과장 ○○○, 1과 내지 5과 과장 ○○○과 비서들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억울하게 비법밀수죄로 구속되어 구류장에서 고문을 당했고,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교화소에서 굶주리며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7. 8.부터 2004. 9. 21.까지 구류장
- 2004. 9. 11. 재판소
- 2004. 9. 22.부터 2007. 2. 6.까지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가) 고문

신고인은 북한에서 수집한 구리 등을 중국에 팔아 돈을 벌어 오는 일을 하다가 2004. 7. 8. ‘군 허락 없이 밀수출했다’는 비법밀수죄로 영장도 없이 회령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끌려갔음.

구류장에서 예심원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철창에 수갑으로 졸도할 때까지 매달아 놓거나, 두 손을 뒤로 어깨높이 이상으로 높이 라지에타에 묶어놓고(이때 가슴이 비둘기처럼 나오게 되어 일명 ‘비둘기 고문’이라 함), 두발도 꿰어 앉혀서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은 다음은 의자, 몽둥이, 무기청소기, 혁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 마구 구타하였음. 결국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게 됨. 그밖에도 구류장에서는 ‘비행기 고문’(한 발로 서고 한 발은 뒤로 들고, 두 손은 뒤로 비행기 날개처럼 들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고문), ‘오토바이 고문’(오토바이를 탄 자세, 즉 두 손을 앞으로 들고 무릎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하고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고문), ‘뽀뽀고문’(타이야 튜부에 공기를 넣는 수동식 펌프작동처럼 뒷짐지고 앉았다 섰다를 수백번 반복시키는 고문)을 당했음.

(나) 비인도적 행위

매끼마다 주는 음식은, 중국에서 짐승 사료로 수입한 염량가루를 100g도 안 되게(규정량은 150g) 지급하여 허약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음. 손가락은 꼭지를 꿰어 없앤 것을 주었음. 꼭지를 꿰은 이유는 그 꼭지를 목구멍으로 넘겨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함. 신고인이 2달간 있는 동안 실제 2명이 허약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였음.

(다) 구류장 일과는 아침 5시 기상하여 조식 7시부터 30분간, 점심 12시부터 30분간, 저녁 7시부터 30분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교정자세로 있어야 함. 교정자세란 죄수는 항상 감방에서 머리를 숙이고 꿰어앉아서 두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가차 없이 매질을 당함. 감방에 드나드는 문은 일명 ‘개구멍’이라고 하여 45cm×45cm 크기밖에 안되는 출입구로 머리를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음. 나온 후에도 예심원들이 허락하기 전에는 이마를 땅에 대고 벽쪽으로 향해서 꿰어 엎드려 있

어야 함.

(라) 신고인은 위와 같은 고문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허리와 오른 팔 뒷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음.

(2)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2004. 9. 11. 재판소에서 판사와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신고인에게 과중한 형인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했고,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지방 대의원 2명으로 이루어진 인민참심원들은 그대로 동조하였고, 변호사는 변론도 없이 오히려 신고인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고 거꾸로 말하였음. 선고가 나자마자 변호사가 신고인 처 명의의 이혼신청서에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게 하였고, 그 순간 신고인과 처는 이혼이 성립되었음. 재판에 대한 상소기일을 10일 주었지만 상소를 포기했음. 북한에서는 상소를 하면 되레 법에 맞섰다고 보복적으로 10년 형이 15년, 사형 등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임.

(3)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제12교화소는 해발 1500m가 넘는 북방의 산간지대에 있어 겨울이 다른 지대보다 훨씬 빠르게 오며 맑은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모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나진 앞바다가 멀리 바라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있음.

신고인은 2004. 9. 22. “도주는 자멸이 길이다. 절대로 도주행위를 하지말라!”는 위협적인 글이 씌여 있는 현수판 밑을 지나 5-6명이 커다란 손달구지에 발들이 비죽 비죽 엇갈려 나와 있는 시체 몇 구를 실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며 제12교화소에 입소하여 ‘라 40’이라는 수감번호를 부여받았음.

(가) 굶주림 - 비인도적 행위

① 교화소의 급식은 안남미 10%, 옥수수쌀 60%, 콩 30%를 섞어 서랍에 담아

증기 가마니에 넣어 찌낸 것을 김을 뽑고 삼으로 부풀려서 ‘밥단지’ 라는 기구로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매겨 찍어냄. 밥 덩이를 식기나 숟가락도 없이 손바닥에 받아 먹음. 급수가 높을수록 삶은 콩 세운 것만큼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광산착암수와 별목일을 하는 수감자들은 1급과 2급 밥을 먹게 되어 있으나 이 양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없음. 보통은 지름이 6cm, 높이가 7cm로 찍어낸 3급(작은 컵 정도 크기)을 먹고, 환자로 휴역하는 수용자나 신입반은 4급, 범칙을 하여 독방에 들어간 자는 5급을 먹음. 교화소 규정상 3급은 180g을 먹어야 하나, 실제로는 교화소에서 중간에 착복하여 3급이 130g 밖에 안 되어 수용자들은 항시적인 굶주림에 시달렸음(4급이나 5급은 말할 것도 없음). 더욱이 위와 같은 교화소 급식(안남미, 옥수수, 콩)조차도 교화소에서는 1년 중 2개월은 장마당에 빼돌려 팔아먹고 임의로 교화소에서 부업으로 경작한 감자를 똑 같은 ‘밥단지’로 찍어 하루 3끼 급식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굶주린 수감자들은 더욱 허약에 쓰러지게 되었음. 복역 기간 중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화국에서 검열 나왔을 적에 한두 끼였음.

- ② 교화소의 급식대로는 누구나 허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 뿌리, 나뭇잎 등 먹어서 죽지 않는 것은 모두 먹었음. 쥐, 뱀은 아주 드문 고급 음식이었음. 분기에 한 번 면회가 허용되고(뇌물을 쓰면 더 자주 할 수 있음)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 가루는 큰 도움에 되나, 생활난으로 한 감방의 60여명의 수감자들 중 면회자는 8-12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그나마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가루는 많아야 15kg 정도인데 그 중 10kg은 교화소에 제공해야 했음. 또 교화소에서는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면회시 의약품, 전구, 책, 등 교화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야 면회를 시키기 때문에 면회도 쉽지 않았음.

(나) 전염병 - 비인도적으로 열악한 환경

전거리 교화소에는 식량난으로 비법월경자 등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서 신고인이 들어가서 퇴소할 때까지 수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2,400명이나 수용되어 있었음. 전체는 5개과로 나뉘고 각 과마다 4-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그에 따라 20평이 채 안되는 교화소 감방의 정원은 15명인데도 60-70명이나 과밀하게 수용되어 잠을 잘 때는 4줄로 옆으로 모로 누워서 ‘툽날 잠’을 자야 했음. 또 감방 안에는 변기가 개방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놓여 있어 썩은 악취가 항상 배어 있었음. 수감자들이 거의 목욕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여(죄수용 수용자 옷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에서 입던 옷을 기워서 입는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흰 옷에는 검은 천을 검은 옷에는 흰 천으로 얼룩덜룩하게 하게 함) 몸에서 악취가 나고, 이, 빈대, 회충이 들끓어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보리알처럼 큰 이 등이 식기에 떨어지기도 하였음.

교화소 위생상태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감자 중 누구라도 전염병(특히 겨울마다 찾아오는 파라티프스가 무서웠음)에 걸리면 바로 전체 교화소에 확산되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노역 중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음. 신고인은 2005. 1. 16. 병방에 들어가서 11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는데, 함께 입원했던 24명 중 8명이 죽어나갔음. 병방에는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었음. 신고인이 속해 있던 2과에서 신고인이 목격한 것이지만 다른 과는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다) 강제노역 - 노예화

12교화소는 원래 동광을 채취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데, 동맥은 거의 바닥이 나서 수감자들은 나무 채벌이나 농사짓는 일에도 동원되었음. 수감자를 관리하는 초병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 수감자들을 노예 같이 부리면서 자신들의 위엄성을 과시한다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온갖 욕

을 하면서 사정없이 매질하고 구타하였음. 수감자들이 산중턱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데 안전보다는 작업성과를 다그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2005. 10. 10.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채 양성되지 않은 건설용 큰 벽돌을 2층 높이만큼 쌓았던 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14명이 한꺼번에 즉사한 적도 있음. 그러나 유족들에게 사망통지서 1통을 보낸 것 외에는 누구도 책임 진 사람이 없음. 동 광산의 수직갱이 무너져 6명씩 죽어나가는 참사도 빈번했음. 2006. 12.경에도 그러한 붕락 사고가 있었음. 갱도 안에는 안전등도 없는데다가 갱도 안에는 안전시설 없이 고압선이 마구 지나가게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도 자주 발생했음. 산에서 원목을 끌어내리다가 밭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도끼질 하다가 밭이 찍혀 잘리는 일 등은 너무 흔한 사고였음.

(라) 시체관리 - 비인도적 행위

전염병, 강제노역, 영양실조 등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어 시체가 생기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쥐들이 시체의 눈, 코, 귀, 생식기 등을 파먹어 알아볼 수 없게 됨. 그러한 시신들을 교화소 안에 있는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시체를 태우는 쇠로 만든 큰 로 속에 집어넣고 장작불로 태우는데 제대로 태우지 않아서 채 타지 않은 사람 뼈가 로 속에 수북히 쌓여 있음. 시체를 태운 잿가루를 비료처럼 밭에 재처리하여 뿌려진 곳에서는 호박, 무, 배추 등 야채가 잘 자랐음.

(마) 교화소의 수감자 분포 등

신고인은 2004. 9. 입소하여 2007. 2. 대사로 출소했고, 그 후 탈북하여 2009. 한국에 입국하였음. 신고인의 수감기간동안 본 수감자들의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자들이었음. 대략 65%가 비법월경자들이고, 생계형 절도범 등이 20%, 강도·강간·살인(강인범이라고 함) 등 강력범이 10%, 사기나 횡령 등이 5%

정도였음. 그 당시는 모두 죄수가 남자들이었는데, 2007. 6.경부터는 여자 비법월경자들 수용시설이 없어 전거리 교화소에 여자를 수용하는 과가 생겨서 2010. 2.경에는 800명에 이르렀고, 전거리 교화소 총 수용자는 3,200명에 이르렀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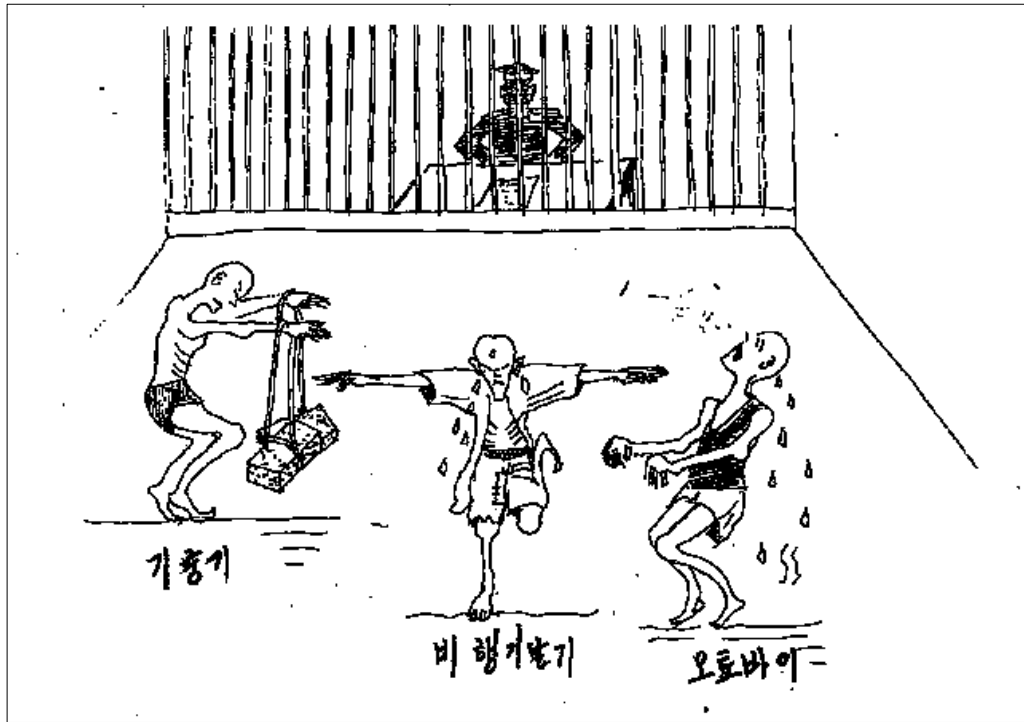
복역자들은 ‘단련대’는 살이 내리지만 ‘교화소’는 뼈가 내린다고 함. ‘단련대’는 사회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교양이라 해도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지만 교화소는 항시적인 굶주림과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속에 수용자들은 육체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음.

3. 증거자료 등

- 남한에 들어 온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진술
- 신고인이 그려서 제출한 별지 그림들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 증산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보안원 ○○○, 검사 ○○○, 변호사 ○○○
(신고인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 당비서 ○○○, 청년동맹비서 ○○○
- 증산교화소 보안원 ○○○(당시 59살, 제11호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 ○○○ 보안원(당시 28세, 미혼)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후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증산교화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 2005. ~ 2006.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인민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신고인은 예심소와 보안소 등에서 총 9개월간 수감되어 있다가 2005년 공개재판(인민재판)에 회부됨. 공개재판은 신고인이 다니던 회사(군수공장)에서 열렸음. 회사 강당에서 열린 공개재판에 거의 사람이 가득 찼던 것으로 미루어 약 1천명 정도 방청객이 모였음. 이들은 모두 공장 직원으로 인근 주민 등 외부사람은 없었음. 재판은 6명의 판사의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6명의 재판관은 인민재판원 1명, 보안원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당비서 1명, 청년동맹비서 1명으로 구성되었고, 재판 시간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음.

신고인에게는 형식적으로 변호사가 있어 재판 3일 전에 신고인을 만나러 와서는 “예심 과정에서 때린 사람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담긴 질문지에 모두 “아니오”로 표기하도록 시키고, 신고인의 사진을 찍고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갔으나, 정작 재판 당일에는 신고인의 변호사 모습을 볼 수 없었음.

재판 과정에서 신고인에게는 딱 한번, 남한여권을 소지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남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을 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신고인은 누가 만들어주어 소지하였을 뿐, “남조선”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른다고 변명을 하여 총살은 면하고 노동 교화형 13년 형을 선고 받음.

아마도 사전에 누가 시켜서 각본을 짠 것이겠지만, 총살이 아닌 13년 형이 선고되자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처단하라, 처단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선동을 함.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서류에 신고인의 지장을 찍게 하고 이를 교화소 계호에게 넘겨 신고인의 신병을 인수케 함.

(2) 증산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가) 교화소의 규모와 일상

- ① 공개재판에서 13년을 선고받고 2005.경 제11호 교화소(증산 교화소)로 이송됨. 교화소에 들어가면 흰 벽에 검은 글씨로 “도주는 자멸이다”라고 써있고, 물지는 않도록 훈련시킨 것 같지만 커다란 개(흰색) 7~8마리가 있었음. 교화소는 흙집(진흙으로 지어짐)인데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많았음. 도착하자마자 여자 계호 두 명이 와서 여자 죄수들을 다 벗으라고 하고 손을 목 뒤에 각지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게 하며 몸수색을 함. 증산 교화소에는 1과~12과까지 있었고, 남자는 1과, 4~5과, 7~12과, 여자는 3과, 6과로 구성됨. 신고인은 3과에 소속되어 들어간지 약 4달 만에 3과 총반장을 맡게 되어 명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3과에 인원수가 최고 많을 때가 683명, 적을 때는 480명 정도였음. 1과~12과를 다 합치면 교화소의 총 인원은 만 명가량임.

증산 교화소는 학교, 보안원 가족 등이 사는 큰 마을같은 형태로 개천 교화소와 합병한 것으로 규모가 상당했음. 진정인이 속한 3과는 다시 1반~10반까지 나누어져 각 반 에는 반장이 있음. 1개 반이 1방을 쓰는데 1방에 50~60명 정도 들어감. 반에 속하지 않고 식당, 창고 등에 직속된 재소자도 소수 있음.

- ② 증산 교화소에서 하는 일은 거의가 벼농사였음. 모내기, 잡초뽑기, 추수,

거름주기 등. 1개 반이 가꾸는 벼밭(논)이 20정보. 50명 여자가 소달구지로 힘들게 20정보를 가꾸는 것임. 바다가 인접해 있어 배타는 일을 하는 재소자도 가끔 있었음. 보통 뇌물 수뢰 등 경제범은 약한 강도의 노동을 하기도 함.

교화소 기상시간은 오전 5시, 농사일을 마치고 밤 9시에 들어와 10시에 취침함.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는 자는 것 외에 따로 시키는 일은 없었음. 점심의 경우는 반에서 한 두명이 교화소로 들어가 밥을 타오면 밖에서 농사일 하다가 이동식사를 함.

(나) 강간

교화소 안에서 특별히 악랄했던 계호는 ○○○(신고인이 출소 당시 약 59살로 지금 정년퇴직 하였을 것)이라는 자임.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계호 들 중에서는 그나마 모범이라고 할 만한데, 계급은 줄2+별2임. 교화소에서는 “막갈리”라 하여 여자들 4명씩 조를 짜 밤에 눈을 지키러 막을 쳐놓고 밖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위 ○○○이라는 자가 젊은 여자(○○출신)를 임신시켰고, 이 여자는 임신 6개월째에 병보로 나감. 보안소에서 이 사실을 듣고 검열을 나와 ○○○이 여기저기 조사 받으러 불려 다녔으나 이 자의 형이 ○○○ 부소장이어서 건드릴 수 없었음. 교화소 안에서 계호들이 여자 수감자들을 겁탈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남. 단, 피해 당사자들은 어차피 신고할 데도 없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 계호가 신고인의 노동 분량을 줄여주거나 반장을 시켜주거나 하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므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

(다)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위 ○○○는 재소자들을 때릴 때 삼을 이용, 삼날 등으로 사람을 때림. ○○○ 뿐 아니라 모든 계호들이 재소자를 일상적으로 구타했는데 대부분은 손

도 대기 더럽다며 군화 또는 천신발을 신은 발로 얼굴, 몸통 등을 가리지 않고 발로 찼음.

또한, ○○○(여자, 보안원, 당시 28세, 미혼, 줄1+별4)도 재소자들을 많이 구타를 함. 중국 갔다 온 재소자들의 좋은 옷 등을 다 빼앗아감. 이 자의 구타 방법은 주로 각자(각목)로 특히 어깨 부위를 때리는 것임. 기분이 안 좋으면 “야, 반장, 가져와”라고 하여 각자를 달라고 한 뒤 재소자들을 각자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음. 맞은 재소자들은 소화를 못시켜 먹은 것을 토하곤 하여 더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음. 또 머리채를 잡아 흙벽에 부딪히게 하는 구타 방법도 사용하였음.

(라) 노예화

신고인은 총반장이 되어 소 직속이 된 후에는 구타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짐. 반장에게는 보안계장 ○○○, 교양 과장 ○○○ 등 특정 인물에 대해 밀정 임무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음. 총반장은 저녁 9시면 각 반 반장들에게 인원보고를 받음(예: 막갈리 4명인데 오늘은 5명 나갔음 등). 계호들은 다 교화소 단지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함. 따라서 재소자들을 불러 개인 머슴처럼 교화소 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음. 또 계호들의 횡령이 빈번한데, 벼 생산하는 곳 담당은 벼를 횡령하고, 식당 담당은 콩을 횡령하는 식임. 이럴 때 죄인들을 동원, 벼 가마 등을 지어다가 자기 집에 부리게 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여자 계호들은 횡령이 어려우니, 죄인들을 시켜 농사일 하고 들어올 때 주머니에 벼 이삭 등을 넣어오게 한 뒤 이를 빼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계호는 여자 3 남자 1이 있었음.

(마) 비인도적 행위

식사는 통강냉이 간 것과 콩(일명 단지밥)으로 되어있고 소금국이 같이 나옴. 국가에서 정한 분량이 있어 한 끼에 콩이 136알 이상(136~150알)이 포함

되어야 하는데 계호들이 중간에서 빼들리는 것이 많아 실제로 밥을 풀어서 세어보면 40~50알 정도 들어 있었음. 가끔 검열이 나오는데, 이 때만 콩 개수가 제대로 나오고, 계호들이 재소자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늘 이렇게 나온다고 해라”고 명령하였음. 재소자들은 식량이 모자라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할 때, 벼 이삭을 몰래 주워 생으로 먹기도 하고, 모내기 중 개구리가 나오면 껍질을 벗겨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뱀도 잡아서 주머니에 식량으로 넣고 다니고, 쥐 잡은 것을 가지고 재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였음.

교화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고 보통 하루에 2~3명, 여름에는 하루 6,7명씩 죽어나감. 사망원인은 주로 허약(영양실조)으로 특히 중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잘 먹다가 갑자기 줄어든 식사량 등에 적응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았음.

교화소에서 면회는 들어와서 1달간의 면회 금지기간이 지나면, 매주 수요일 한 차례 가능함. 원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교화소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소문이 나니 2003. 8.경부터 면회를 가능케 함. 단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은 면회가 일절 허용되지 않음. 이들은 밖에 농사일도 못 나가고 안에 갇혀있음.

전거리교화소는 가족이 동반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증산교화소는 불가능함.

(바) 살해

신고인이 교화소에 들어가자마자, 밤 11시 넘어 재소자들을 다 모이라고 함. 모여보니, 19살 남자 재소자(성명불상)가 도주하다 21살 안전원에게 총에 머리를 맞아 죽었음. 사지는 멀쩡한데 시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다 날아감. 재소자들에게 도주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시체를 두루 보임.

또, 함께 수감되어 있던 20대 초반 아가씨(성명불상)가 병에 걸려 눈에 구더기가 슬고, 옷도 거의 헐벗은 채 누워서 헛소리로 “내 밥 달라, 내 밥 달라”고만 중얼

거림. “단지밥”이 나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후 몇 시간 만에 죽었음. 사람이 죽으면 담요가 없어 시체를 담요에도 못 씌. 증산 교화소 단지에는 “꽃동산”이라고 불리는 민동산이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 묻는 곳임. 신고인이 직접 남자 재소자들과 함께 묻은 시체 중에 기억나는 것은 2005. 6.경 소달구지를 끌고 가 묻은 시체임. 죽은 사람의 이름은 ○○○(사망 당시 29살, ○○출신, 허약 3도로 죽었으나 병명은 심장마비로 기재, 교화소 안의 모든 죽음은 다 심장마비로 기재함. 부검 등을 통해 영양실조를 밝혀내거나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임)였는데 당시 이 시체에 부여된 번호는 3721번이었음. 뜻을 물어보니 그 해 1월 1일부터 죽은 숫자를 세어서 3721번째라고 함.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증산 교화소가 서해 쪽이라 해안에 독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재소자들이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천명 가까운 숫자가 죽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함.

시체는 보통 우마차에 대충 실어 얇게 판 구덩이에 묻고 평평하게 함. 화장을 하지는 않고 묻는 곳도 폭을 좁게(30cm 정도) 파서 시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꼭꼭 눌러서 넣을 정도임. 꽃동산은 풀 한포기 없는 민동산(붉은 진흙산)으로 시체를 얇게 파서 온 산에 묻었기 때문에 밭을 디디면 물컹물컹 함. 증산 교화소 있는 마을에 들어서면 꽃동산만 풀 없는 산이라 유독 눈에 들어옴. 한번 시체를 묻으러 다녀오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커서 다시는 가기 싫었으나, 신고인은 반장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기면 시체를 묻고 소에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음. 신고인이 직접 묻으러 간 경우만 해도 7회 정도 됨. 묻으러 갈 때는 내부 선생이 남자 1명, 여자 3명이 같이 감. 지금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꿈에 꽃동산을 보고 악몽을 꾸는 바람에 칼을 베고 자기도 함.

증산 교화소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고에 넣어 석회를 채우고 6~7구 모일

때까지 보관하며 어느 과 시체 바치는 날이 오면 시체를 소달구지에 싣고 꽃동산에 가서 묻음. 사망자가 많을 때는 소달구지 4대에 시체 10구까지 한 번에 싣고 간 적 있음. 다만 여름에는 시체를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묻음. 시체는 가마니로 말아 들 것에 두 구씩 실어 나름. 워낙 사람이 먹은 것이 없어 시체가 가볍기 때문에 두 구씩 들것에 얹어도 남자 둘이서 들고 갈 만 함.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3과에 함께 있었던 ○○○(○○출신, 당시 약 28세), ○○○(○○출신, 신고인보다 약 10살 연상, 6번째 북송이었음), ○○○(출신지 미상, 신고인보다 연상, 현재 대한민국 입국)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g) 강간,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조사과정에서의 고문피해

■ ○○보위부 및 ○○집결소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21.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보위부 ○○○(키 175cm이상, 표준몸매에 40대 정도) 잘생겼다고 이야기
되었고, 당시 ○○보위부를 거친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임. 신고인을
구타한 며칠 후 ○○보위부로 옮겨갔음

○ ○○집결소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탈북하였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후 강제북송 되어 ○○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보위부, 2005. ○○집결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비인도적 행위 - 부당한 신체수색 등

2003년과 2005년 강제북송시 ○○보위부로 이송되어 이송된 탈북여성 4~5명씩이 1조가 되어 여자 보안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함. 몸수색은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생식기나 항문에 돈 등을 숨기지 않았는지 검사하게 위해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게 함. 이때 의심이 가면 보안원이 위생장갑을 끼고 미혼, 기혼 여성 등에 관계없이 직접 항문이나 질 안에 손을 넣어 검사를 하기도 함.

간혹 검사를 피해 일단 돈을 삼킨 후 배설물에서 이를 회수, 비닐에 싸서 항문에 넣어 숨기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를 적발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감시를 함.

화장실이라는 것은 바깥에 땅을 크게 파고 만든 구덩이이며, 수용자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여기서 용변을 보게 함. 이 때 여성수용자들이 용변을 보는데도 화장실 주변을 남자들이 둘러싸고 감시를 함. 이들 남자들은 보안원은 아니고, 일반 죄수, 즉 탈북 시도자가 아닌 절도 등의 일반 죄수들임.

이처럼 탈북자들이 돈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감방 안에서도 수감자끼리 돈으로 옷 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임.

(2)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 구타 등

(가) 2005년 ○○보위부에 있을 때에 많이 맞았음. 중국에서 북송될 때에 돈을 몰래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 서로 싸움이 있었고 동료들도 많이 때렸지만 보안원 ○○○이 신고인을 더 심하게 때림.

당시 신고인이 수용된 거실은 대변은 외부에서 보고, 소변은 거실내에서 한 쪽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장소에서 해결하는데, 신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신입을 신고인의 자리에 들여보내었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리도 좁은데 자꾸 들여보내 내자리에 앉힌다’고 이야기 하자, 보안원 ○○○이 족쇄(수갑)를 던졌음. 신고인이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맞아 피가 났음. 그러자 ○○○이 신고인을 복도로 나오라고 해서 나무로 된 의자가 다 박살이 나도록 마구 때리고 발로 찰. 이로 인해 신고인의 온몸이 멍들고 딱딱하게 굳었음. 신고인이 일어나지 못하자 거실로 들여보냈는데, 너무 아파서 앉아 있지 못하자 동료들이 신고인을 빙 둘러앉아 도와주어서 보안원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누워있을 수 있었음.

의료조치는 전혀 없었고, 장티푸스가 2/3정도 걸렸고 장티푸스 걸린 허약자는 끌어내어지거나 규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맞아 죽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함. 신고인도 장티푸스로 인해 입천장이 붙어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설사가 겹쳐도 약도 주지 않음.

당시 ○○보위부에는 남자 2칸, 여자 3칸이 있었고 신고인 거실에는 34명이 수용되어 있어 비좁아 잠을 자려면 한명이 다리를 벌리고 그사이에 또 1명이 들어오고(이 사람의 머리는 또 다른 사람의 배에 겹치게 됨) 하는 등 줄을 지어야만 했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정도임.

2005년 ○○집결소에 2개월 정도 있었는데 동료 수용자가 보안원에게 신고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집결소 발전 건설대 보안원이 신고인을

반장을 시킴. 그런데 반장을 시킨 것은 신고인이 돈을 바칠 것을 바라면서 한 것으로, 결국 돈을 바치지 않자 집결소에 들어간지 1주일정도 만에 보안원 ○○○이 발전소 건설장 침실로 신고인을 불러내어 직경 10cm정도, 길이 삼자루 길이의 불쏘시게 막대기로 신고인의 온몸을 마구 때림. 처음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몽둥이로 다리와 온몸을 때림. 이때 척추를 맞은 것으로 인해 온몸에 열이 나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하자 의사진단을 받았는데 왼쪽 늑막염진단을 받았음.

이후로는 반장이니 작업을 더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여 수시로 신고인을 구타함. 하루는 나무뿌리를 패라고 해서 신고인이 아파서 못하고 있자 보다 못한 다른 보안원(총각이고 어림)이 대신 패주었지만 결국 다 못하자 보안원에게 돈을 주었다며 몽둥이로 때림. 2~3일에 한번씩 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쓰러져 있으면 발로 밟았음.

당시 구타당한 것으로 인해 왼쪽 늑막(2005년도 늑막염)에 늑막염이 생겼고, 탈북 후 중국에서도 북송 두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결핵으로 발전. 국내입국해서 하나원에서 결핵치료 받았음. 아직도 척추가 휘어 있고 늑막이 아픔.

(나) 수감시설 내에서 규율은 엄격함. ○○보위부는 정자세로 앉아 있고 조사받음. 의복은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감. 남편이 돈을 써서 옷을 보내왔음. 한글이 있는 옷과 청바지는 빼앗김. 샴푸 등은 보위부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며 빼앗아감.

식사는 형편없고 ○○보위부는 3식을 주는데 국수죽임. 숟가락의 꼭지를 자른 등근 것으로 3스푼 분량. ○○집결소는 ‘북한식기(군대도 동일하게 사용, 알루미늄 밥그릇에 조금 줌)’ 국은 멸건 소금국. 다팍(무우절임)을 주기도 하는데 없을 때가 더 많음.

화장실, 목욕 등 위생상태는 열악하여 목욕은 전혀 못함.

수면 취침은 10시경인데, 수용자 들이 너무 빼곡히 많아 다리 벌리고 연결하여 배에 다른 사람이 눕고 잠을 잠.

노동 등 하루 일과로 보위부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음. ○○집결소에서는 기상 후 겨울에는 눈을 가지고 세수하거나, 차가운 발전소 물을 가지고 세수함. 아침식사 이후 백두산에서 나온 조그마한 돌(보석 유사한 돌) 고르기 작업, 점심식사 후 다시 작업. 작업량이 각 조별로 마대단위로 정해지는데 채우지 못하면 저녁에 잠을 재우지 않음. 작업이 없는 날에는 돌 나르는 도구를 가지고 뛰게 하고 몇 초 내에 오라고 하기도 함.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신고인 1차 복송시 ○○○(신고인보다 3살 아래, 돈을 많이 빼앗김), 2차 복송때 ○○○(동료 수용자).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 ○○군 보위부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위부 지도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 과장 ○○○(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통통하고 눈이 컸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여러 차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강제북송을 당해 ○○군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2004. ○○군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비인도적 행위 - 부당한 신체수색

몸수색을 할 때 20대 중반의 남자 5~6명이 여자 직원이 입회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복도 양 옆에 한줄로 세운 후, 여자들을 옷을 전부 벗게 하고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뽐뿌질(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고 사타구니를 만지거나 하며 머리카락 속부터 발 끝까지 검사. 몸수색 중 값나가는 물건(가락지, 목걸이 등)은 가져감. 바로 맞은 편의 아이들 줄에서 자식들이 엄마가 몸 수색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음. 벗어놓은 옷은 아기 기저귀 끈까지 다 펼쳐서 수색함. 몸수색 중 나이 어린 처녀들이 부끄러워서 반항하면 각자로 몸통, 사지 등을 때림.

몸수색이 끝나면 옷을 주워입고 방으로 감. 방은 성냥개비 통처럼 8평짜리 한 방에 인원이 뽐뽐하여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자기 앉을 자리는 없는 것임. 임산부가 두 명 있었는데 면적이 크니 수감자들에게 눈총을 받았음. 방 안에 수세식 나무뚜껑 덮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임산부들은 여기로 밀려남. 수세식 변기이나 물은 새벽에 잠깐, 적은 양만 나옴. 이 때까지는 변이 꼭 차있어 냄새가 심하고 물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물이 내려가면 이 물을 식수로도 이용했음. 순간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수건을 적셔 저장용 물통 대용으로 사용하여 나중에 수건을 짜서 아기를 먹이고 하였음.

(2)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가) ○○군보위부에 이송되니 보위부 직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로부터

책상다리 같은 “각자(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는 때리지 않고 주로 무릎과 손가락을 때렸음. 특히 책상에 두 손을 올리게 하고 손가락을 각자로 때림. 무릎이 골절되어 무릎관절을 잘 쓰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은 사람도 있다고 함. 이렇게 때려 죄수가 죽어도 때린 자는 처벌을 받지 않음. 감옥 안 바닥은 마룻바닥인데 씻지 못해 이, 빈대가 극성이어서 밤에 불을 끄면 가려움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음.

(나) 보위부 생활때 임신부에게 낙태주사를 한 것을 목격했음. 중국에서 아이를 배어오면 낙태를 시키는데, ‘리바늘’이라는 용액 20cc를 임신부 배(태아 머리 부분)에 주사하면 주사 후 다음날 아침에 진통이 시작됨. 5~6개월 넘으면 살아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문지로 아이를 싸서 감방 바깥으로 건네고, 보위부 사람이 양동이에 담아 복도에 놔둠. 아이 엄마는 감방 안에서 밥주는 구멍으로 밖(아이가 담긴 양동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양동이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림. 얼마 후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보위부 직원이 양동이를 들고 나간 것임. 들고 나간 아이는 ○○보위부 앞마당 포도나무에 부었음. 거기를 파보면 아기 시체가 많이 나올 것임.

(다) 반장(성명불상)이 보위부직원보다 더 무서웠음. 같은 탈북자인데 규율을 잡는다고 남의 옷을 뺏거나 행패를 부리고 다른 재소자들을 구타함. 물론 반장도 여성이므로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함.

2004년 겨울에 북송되었을 때 ○○시 보위부의 ○○○과장(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퉁퉁하고 눈이 컸음)이 당시 열이 나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있던 신고인을 오전에 조사실로 불렀음. 과장과 함께 보위부 직원 남자 2명(젊은 총각이었음)이 후에 조사실에 들어왔음. 과장은 신고인의 옷을 다 벗기고 무릎 꿇리고 뒷짐을 지게하고 아기는 뒤에 앉히고 조사

를 받게 함. 책상 바로 옆은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물이 끓는 주전자가 있었음. 과장이 “너 좀 맞아볼래?”라고 하여 신고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했는데) 왜 말이 길어지냐?”고 하여 신고인이 “이제 죽어도 (중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럼 죽어봐라. 넌 죽어야 안간다”하면서 난로 속에 꽂혀있던 갈고리(불쏘씨개)를 뽑아 신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근을 찌름(신고인의 오른쪽 가슴에 약 10cm 길이, 폭 1~2cm 가량의 화상흉터가 남아있음). 신고인이 아파서 바닥을 구르자 “아직 죽을힘이 있다”고 함. 뒤에서 두 돌 지난 신고인의 아이가 이를 보고 마구 울자 낡은 걸레로 아이 입을 틀어막음. 조사 과장이 위에 언급한 남자 두명을 들어오라고 불렀음. 이 중 한명이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라 책상에 놓으니 과장이 컵을 치우고는 주전자 끓는 물을 뚜껑 덮인 채로 신고인의 뒷목에 쏟아 부음.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목에서 어깨로 흘렀음. 이로 인해 신고인의 뒷목 위쪽부분에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자리부터 오른쪽 어깨 뒤쪽에 한일자로 남은 화상 흉터가 있음. 그 후에도 과장은 불쏘씨개로 신고인의 오른쪽 발목 안쪽을 찌러 화상을 입혀 현재 오른쪽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에 얇은 켈로이드 흔적과 검게 색상이 변한 반원형의 화상흔적 다수가 겹쳐져 있음.

신고인이 화상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이 책상에 앉히더니 손을 펴라고 함(손바닥이 위로 가게). 본래 조사를 받으러올 때마다 신고인의 소지품(가방 등)도 들고 들어와 “이 물건은 어디서 구한거냐?”등 취조를 받는데, 과장이 신고인의 가방에서 중국 장백현 쓰레기통에서 주은 모(wool)로 된 털실 뭉치와 코바늘을 발견하고는 코바늘로 신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뜯어냄(오른손 3,4,5번째 손가락 아래쪽 손바닥에 코바늘 눈 크기의 작은 흉터 다수 남아있음). 아파서 과장 손을 붙들고 애원하니 아이 입에서 걸레를 빼서 신고인에게 물게 하고 밖에 서있으라 함. 화상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너무

아파 제대로 서지 못하자 팔을 구부린 채 위로 들게 하여 뒤쪽으로 족쇄를 채워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방치함. 이 때도 신고인은 계속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음. 저녁에 풀어주었을 때는 관절이 빠질 듯 아파서 손을 바로 내릴 수 없는 상태였음. 조사실에 들어간 것은 오전이었는데, 점심은 조사받느라 먹지 못하였음. 풀려난 후 옷을 주워 입고 들어가 울었는데, 운다고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함.

(라) 보위부에서의 식사는 통강냉이인데 바가지에 퍼주면 감방 안의 반장이 알수로 세서 배급함. 어른은 30알, 어린이는 15알임. 모두들 배가 너무 고파서 보위부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간은 신고를 안 하고 죽은 사람 뒤편까지 식사를 받곤 했음.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현재 48세가량) 이라는 여성으로 현재 탈북하여 ○○광역시에 거주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 ○○군 안전부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안전부 감시인 중 특사 ○○○, 소위 ○○○(2001년 당시 31~32세. 결혼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군 안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간 및 비인도적 행위

○○군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방에는 신고인을 포함 3명의 여성이 수감되어 있었음.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곳은 소위(별 하나, 막대기 하나의 계급장)와 특사, 상사, 세 명이 교대로 감시근무를 하였음. 특사의 이름은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 자가 밤마다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의 쇠창살 앞에서 긴 싸리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신고인을 툭툭치며 일어나라고 함. 시키는 대로 일어나면, 체포될 당시의 옷(치마와 짧은 소매 상의, 갈아입을 옷도 구할 수 없었음)차림 그대로인 신고인을 긴 막대기로 툭툭치고 건드리면서 치마를 올려라, 가슴띠를 올려라, 팬티를 내려라 등등을 시키며 성추행을 함.

신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특사는 쇠창살 밖에서 신고인의 머리(뒤통수 또는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어당겨 수차례 쇠창살에 심하게 머리를 찧음. 신고인은 코피가 줄줄 흐르고 폭행에 못이겨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반항할 때마다 쇠창살에 얼굴을 찧어 폭행함. 이로 인해 코피 뿐 아니라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음. 밤에 잘 때는 반드시 쇠창살 쪽으로 가까이 나와서 누우라고 함. 감방 안쪽에서 자려고 하면 긴 막대기로 찧러 나오라고 하므로 제대로 잘 수가 없음.

3명의 수감자 중 먼저 들어온 2명이 나가서 마지막 며칠간은 신고인 혼자서 수감되어 있었음. 그러자 하루는 감시인 중 소위 ○○○(2001년 당시 31~32세. 결혼

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가 밤에 신고인을 감방의 작은 개구멍(철문으로 되어 있음)으로 기어나오라고 시킴. 신고인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자꾸 나오라 협박을 하므로 기어나감. 그러자 소위가 신고인을 강간하였음. 강간 후 원래 감방으로 다시 들여보내졌고, 어떠한 의료적 조치 등도 불가능하였음.

이 곳에서 있다가 노동단련대로 이송되기 전, 지문을 찍고 ‘이 곳에서 있었던 일체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엄수를 맹세시킴.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아느냐’고 또 신고인의 얼굴을 쇠창살에 박으며 폭행함.

(2) 수감시설의 열악성

식사는 강냉이밥이나마 3끼가 나왔음. 씻거나 할 수 있는 위생시설은 없었으며, 식기그릇은 세면그릇 대용으로도 사용됨.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진술, 같은 동료수감자 ○○○(○○남도 ○○), ○○○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g) 강간,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 ○○노동단련대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17.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노동단련대 ○○○(대위, 35~6세 정도, 키가 크고 허리가 구부러짐)
- ○○보위부 계호원 ○○○(보통체격, 마르고 25~6세 정도), 특별히 악랄하고 근무시간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임, 신고인이 수용된 당시에 신고인이 당한 것과 동일한 피해를 3명이 당함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중국에서 북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99. ○○노동단련대
- 2003. ○○시 보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고문

1999년 ○○노동단련대 이○○이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하지 않은 물건 중개를 했다고 자백하라며, 주먹으로 배를 때려 앞으로 꼬꾸라지자, 발로 걷어차서 신고인은 뒤로 넘어져 철제로 된 네루(철길선로 모양)에 뒷머리가 부딪혀 피가 나고, 4시간동안 의식을 잃어버렸음. 피가 나고 의식이 없는데도 의료조치가 전혀 없어 신고인의 집에서 약을 가져다가 치료를 했음. 이로 인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충격을 받아 어지럽고 멍했음.

2004년 ○○보위부에서 동료들을 위한다는 좋은 일로 통하는 계호들을 통해 외부에 쪽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안 계호원 ○○○(보통체격, 마르고 25~6세 정도)이 신고인을 수용거실 창살 앞으로 불러내어 처음에는 막대기(교실에서 사용하는 지시봉 정도)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자백을 강요함. 아파서 신고인이 조금 피하자 가해자가 신고인의 앞 머리카락을 잡고 철창으로 잡아당기면서 여러 차례 세계 부딪히게 해 이마 위쪽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혔으며, 정신이 혼미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에 앉아 있었음.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의료처방은 전혀 없고 스스로가 소금을 상처에 갖다 붙이는 정도임.

(2) 수감시설에서의 생활 - 비인도적 행위

수감시설내 규율은 보위부에서는 하루 종일 정자세 유지, 취조, 규정 학습. 단련대에서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나무베기 등을 함.

식사로 3식을 주기는 하지만 국수로 죽을 끓이거나, 강냉이 알의 껍질이 그대로 있는 강냉이 밥을 한 움큼 정도 줌. 반찬은 전혀 없고 명절때 김치나 염장무우 1조각 정도를 줌. 국은 소금국을 주는데 무우 시래기라도 들어있으면 행복한 날임.

의복은 속옷 등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만 의류지급이 없어 신고인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생활함. 원래 모포와 베개가 지급되어야지만 먼저 들어온 수용자들이 차지하거나 지급되지 않아서 입은 옷 그대로 잠을 잠. 구류장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고 변기가 아닌 꺽통을 사용, 단련대는 외부에 화장실이 있음. 목욕은 전혀 하지 못해서 이가 바글거림, 구류장 거실은 마루바닥이고, 단련대는 1, 2층 침대 구조임. 침대는 나무바닥에 벼의 껍질을 넣은 마다라스(메트리스)로 이루어 짐.

수면은 취침 10시, 기상 5~6시하며, 노동 등 하루 일과로 단련대에서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나무베기 등을 함.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진술, 남아있는 상처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

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국군포로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20.

나. 신고인

○ ○ ○ ○

다. 피해자

○ 신고인

○ 북한의 가족들 ○ ○ ○

라. 가해자

○ 북한 당국의 책임자 ○ ○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6·25전쟁 발발로 1953. 7. 4.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었음. 1954. ○○○부터 함경북도 은덕군 아오지 포로수용소 탄광에서 강제노역과 차별에 시달리다가 2000. ○○○ 탈북하여 한국에 귀환하였음.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 가족상봉, 자유왕래, 서신교환, 피해배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함. 국가가 국군포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총 들고 나라 위해 싸우겠는가?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의 내용

(1) 불법 억류 및 이송

신고인은 1952. 3. 말경 소집영장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전방사단인 ○○○에 배치되어 최전선인 ○○○ 전투에 투입되었음. 1952. 12.경 화랑무공 훈장을 받고 하사로 승진하였는데, 1953. ○○○ 최전방 ○○○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오후 ○○○로부터 정전협정 소식을 들었으나 1953. ○○○경 평남 ○○○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그곳에 국군포로 500여명과 미군포로 6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개월 후 평남 ○○○ 탄광으로 이송되어 ‘내무성 중앙병원’이라는 곳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954. ○○○ 열차에 태워져 함경북도 은덕군(해방전 경흥군) 아오지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45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있었는데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라고 불렸음. 북한의 제일 힘들고 위험한 20여개의 탄광, 광산, 제철, 제강소에는 모두 ‘내무성 건설대’로 위장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5만

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노동착취를 당했음. 함경북도만 하여도 아오지 탄광, 오봉 탄광, 고건원 탄광, 통북 탄광, 훈룡 탄광, 풍인 탄광, 온성 탄광, 주원 탄광, 상하 탄광, 학포 탄광, 유선 탄광, 무산 광산,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가 있었다. 함경남도 검덕 광산, 룡양 광산도 내무성 건설대 명칭으로 국군포로들을 수용하였음.

(2) 노예화(강제노동) 및 비인도적 대우

아오지 탄광은 메탄가스가 많아 한 번 폭발 사고로 대량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라서 최소한 15일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국군포로들은 아무 교육 없이 바로 갱속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첫날부터 사망자가 속출했음. 탄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음. 식사는 아침, 저녁 턱없이 부족한 좁쌀밥 반 그릇에 식은 소금국을 말아서 훌훌 마시고 나면 끝이었음. 2,000m 내지 4,000m 지하막장의 온도는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 숨쉬기도 어려웠음. 일반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작업 중에 식사를 했지만 국군포로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음. 하루 실적은 8톤으로서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었음. 작업량을 계속 완성치 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가곤 했음. 지하 막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밖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영하 35도 강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음. 저녁 식사가 끝나면 김일성 가계에 대한 학습을 2-3시간 하고 비판서를 쓰다보면 11시가 넘어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음. 항상 굶주렸고, 의복도 1년에 작업복 2벌밖에 공급받지 못했고, 런닝과 팬티도 1년에 한두 개 배급받았을 뿐이었음. 일반 광부들에게는 매분기별 작업복 한 벌과 신발 두 켤레씩 주는데 비하여 차별이 심했음. 국군포로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야 내무성 건설대 안의 의무실에 보내주었는데, 그곳은 침대 4개에 의자도 없고 약도 없어서 몇 시간 누웠다 오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음. 내무성 경찰들은 항상 총부리를 겨누고 따라 다니며 갱내에서의 포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시하여 포로들 상호간

은 대화조차 할 수 없었음. 휴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밖에 없었음. 북한정부는 1956. 6.경 내각 결정 143호를 내려 450명의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주어 사회에 내보내다 했으나, 공민증만 주는 것일 뿐 같은 탄광에서 같은 작업에 시달렸음. 이전에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 내무원들의 감시만 받았지만, 나와서 부터는 북한의 안전부, 보위부, 마을 단위 인민반 감시까지 받게 되었음.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에 국군포로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음. 단천 용양 광산, 함경남도 검덕 광산, 유선 탄광 등에서는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공민증은 필요 없으니 남쪽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수백명이 보위부 수용소로 끌려가 소식이 끊어졌음. 또한 국군포로들 전원을 민주청년동맹(민청)에 가입시켜 놓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노동을 착취했음.

(3) 극심한 차별대우

신고인이 있던 곳에서 국군포로 출신은 ‘똥간나 새끼’로 천대받았음. 신고인은 ○○○ 북한 여성과 결혼하고 나중에 입당도 했으나 허울만 당원일 뿐 대우는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감시와 차별을 받았음. 대부분 단칸방에서 생활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경우 식구가 5명 이상 될 경우에는 2칸짜리 방을 주었으나 국군포로인 신고인은 8식구나 되지만 단칸방에서 생활했음. 아들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나이 40이 넘도록 입당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음. 국군포로 가족들은 성분이 좀 좋다는 집안에는 혼사말도 해보지 못했음. 주로 옛날에 북한 정부에서 성분이 나빠서 처단된 가족, 지주 자본가의 가족, 정치범 가족, 사회주의 건설에서 교화소에 갖다 온 자녀 등 불이익을 받던 처녀와 총각들과 결혼을 했음. 국군포로 출신 자녀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광산의 모든 사고에 대해 의심을 받고 처벌을 받았음. 1958년경 어느 날 메탄가스 폭발로 국군포로 39명의 사망과 함께 수십명의 화상자가 발생했는데, 제일 먼저 굴밖으로 나온 사람이

국군포로 백○○이라고 사고의 주모자로 몰아 공개처형을 해버렸음. 그 후 20여명이 죽은 1961년경의 회암2갱 가스폭발사건, 40여명이 죽은 1985. 7.경의 화재사건 등으로 처음 450여명이 아오지 탄광으로 갔는데 지금 20여명만 생존해 있음.

나. 탈북 및 귀환, 송환요구

김일성이 죽은 1994년경부터 배급이 중단되어 식량대란이 발생했고, 신고인 가족도 먹을 것을 찾아 모든 곳을 헤맸고, 풀이란 풀은 독풀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 보았음. 2000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환하였음. 대한민국은 북한에 억류된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 가족상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8조(노예제도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c) 노예화,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제8조 제2항(전쟁범죄) (a) (ii) 고문, (vi)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 (vii) 불법적인 감금, (viii) 인질행위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 납북자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최성용

다. 피해자

○ 최원모(1910. 2. 23.생)와 그 아들인 신고인과 가족

라. 가해자

○ 북한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무장 간첩선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아버지가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 내용

신고인의 아버지 최원모는 평북 정주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치안대를 이끌며 공산군에 맞섰음. 전쟁이 끝난 뒤 신고인의 아버지는

1967. 6. 4. 풍복호를 몰고 선원 7명과 함께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1967. 6. 5. 08:00경 북한 경비정 10여척에 포위돼 총격을 받고 납북됐음.

다른 선원 5명은 풀려났지만 신고인의 아버지는 공산군에 맞선 전력이 드러나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음.

신고인이 최근 확보한 정부 기록에는 신고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남하
하면서 원적지에서 좌익분자를 살해한 것이 발각돼 억류되었다고 적혀 있음. 이후
신고인의 아버지 행적은 알 수가 없음.

신고인이 귀환 납북어부나 탈북자 등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신고인의 아버지는
1970년경 처형됐다고 함. 장기간 부친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신고인 등 가족이 받
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 ○○○이 2008. 10.경 작성한 통보서
- ○○○이 2007. 5.경 작성한 확인서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
(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
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
조(가족권)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2. 22.

나. 신고인

- 정광일

다. 피해자

- 김동식(목사)와 처 등 가족

라. 가해자

- 윤○○(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지○○(회령 곡산공장 보위부장, 사망), 박○○(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공작원, 이하 같음), 김○○, 이○○, 지○○, 김○○, 김○○(조선족), 류○○(조선족)

마. 신고요지

- 피해자 등 다수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후 일체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2. 신고 내용

(1) 보위부 납치조의 구성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장 윤○○와 회령 곡산공장(대규모 담배공장) 보위부장

지○○는 1999.부터 2000. 사이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 및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국인을 북한으로 납치할 목적으로 박○○(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공무원, 이하 같음), 김○○, 이○○, 지○○, 김○○, 김○○(조선족), 류○○(조선족) 등으로 납치조를 구성하였음.

(2) 인권침해의 내용 - 강제실종(납치)

(가) 2000. 1. 초 윤○○와 지○○는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지○○로부터 피해자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음. 류○○ 등 납치조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2000. 1. 16. 오후 2시 연길시 한복판인 ‘예림불고기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이미 준비했던 봉고차에 강제로 태웠으며 강하게 반항하자 심하게 구타를 하였음. 피해자가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박○○은 ‘너는 간첩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또다시 구타하여 실신하게 만들고 그길로 용정시까지 와서 밤이 될 때까지 류○○가 사용하던 용정시 전업국 근처 사무실로 끌고 가서 또 때렸음. 날이 어둡자 다시 봉고차에 태워 북한에 인접한 용정시 삼합진 승적촌 두만강 대안으로 끌고 가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회령시 인계리로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윤○○와 지○○에게 인계하였음.

중국 심양에서 활동하는 ○○○ 선교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0. 11.경 평양 만경대 초대소에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후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여 유해는 평양 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 인민군 91훈련소 구역 내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지나,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바 없음.

(나) 윤○○와 지○○는 그밖에도 국군포로 ○○○ 등과 국군포로 가족 ○○○ 등, 탈북자 ○○○ 등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다고 함.

(다) 2004. 12. 국가정보원은 류○○를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약취)·제6조

(특수탈출) 등 위반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상소포기로 확정되어 류○○는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임.

(라) 2005. 11. 국가정보원은 김○○를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약취)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3. 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06. 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였음. 그는 만기출소한 후 중국에 추방되었음.

(마) 피해자의 처 정○○는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6. 김 목사의 생사 확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그 후속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고, 통일부장관은 2009. 7. 김 목사 생사확인과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음.

(바) 미 연방 워싱턴 DC 지법은 2010. 8. “북한은 피해자의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2천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3억 달러의 징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증거자료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서울고등법원 ○○○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

(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 이산가족

1. 신고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5. 24.

나. 신고인

○ 이상철

다. 피해자

○ 신고인과 가족

라. 가해자

○ 북한 ○○○ 등 당국자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은 북한에 의해 가족상봉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60여년의 장기간 지속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 내용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북한에 의해 60여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사확인, 가족상봉, 왕래, 결합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산가족 문제는 ‘가족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단위의 보호와 통신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인권침해임.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의 진술
- 이산가족 단체 소속원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0조(가족권)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

| 인 쇄 | 2012년 3월

| 발 행 | 2012년 3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63-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

